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의 명예훼손 소송과 공인 법리 연구

계 연 금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 론 홍 보 학 과

2024년 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국의 명예훼손 소송과 공인 법리 연구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게 연 금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 론 홍 보 학 과

지 도 교 수 김 경 호

게연금의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심사위원장 최 낙 진 원

위 원 이 서 현 [illegible]

위 원 김 경 호 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A Study on Libel and the Reasonings of Public Figure in China

JIE YANQIN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02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Study on Libel and the Reasonings of Public Figure in China

A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Gyong-Ho Kim**

The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by **JIE YANQIN**
has been approved by the dissertation committee.

February 2024

Chair Nak Jin Choi

Member Seohyeon Lee

Member Gyong Ho Kim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제Ⅰ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제Ⅱ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 4

제 1 절 중국의 명예훼손 소송 ····· 4

제 2 절 공인 명예훼손 ····· 9

1. 공인 개념의 등장 ····· 9

1) 설리번 사례(Sullivan) ····· 9

2) AP통신 대 워커 사례(Associated Press v. Walker) ····· 10

3) 거츠 대 로버트 웰치 사례(Gertz v. Robert Welch) ····· 11

2. 공인의 유형 ····· 14

3. 공인과 사인, 이분법적 법리 ····· 18

1) 중국에서의 공인 논의 ····· 21

제 3 절 중국 법원 체계 고찰 ····· 23

1. 중국법원 체계 ····· 23

1)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의 제1심 관할(管轄) ····· 23

2)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의 제1심 관할(管轄) ····· 24

3) 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의 제1심 관할(管轄) ····· 26

4)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제1심 관할(管轄) ····· 27

5) 전문인민법원(專門人民法院) ····· 2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Ⅲ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30
제 1 절 연구문제 ····· 30
제 2 절 연구방법 ····· 31
1. 사례의 출처 및 선택 ····· 31
1) 사례의 출처 ····· 31
2) 사례 선택 단계 ····· 32

제Ⅳ장 명예훼손 및 공인 판례 분석 ····· 33
제 1 절 명예훼손 ····· 33
1. 공인 명예권 사례 통계 ····· 33
제 2 절 공인 판례 분석 ····· 40
1. 긍정 이분법 판결: 孔慶東訴南京广電集團名譽權案
(공경동의 남경 광전그룹 명예권 소송) ····· 46
2. 일부 이분법적 판결: 應根甫等訴杭州文暉街道居委會名譽權案
(응근보 등이항저우 문휘가도 주민위원회 명예권 소송을 제기한
사례) ····· 49
3. 이분법적 판결 부정: 朱江洪訴仲大軍侵犯人格名譽權案
(주강홍, 중대군을 상대로 한 인격명예권 침해 소송 사례) ····· 52

제Ⅴ장 결론 ····· 57

참고문헌 ····· 60

Abstract ····· 6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 1> 2가지 기준의 조합에 따른 적용 법리의 차이 ····· 19

<표 2> 사례 출처 ····· 32

<표 3> 사례 심리 소재지 ····· 33

<표 4> '재판문서망' 연도별 공인 승소/패소 결과 ····· 34

<표 5> 2013년-2023년 공인 명예훼손 사례 ····· 36

<표 6>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례 ····· 4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 림 목 차

<그림 1> 2013년-2023년 일반 명예훼손 사례와 공인 명예훼손 사례 건 수 비교 ····· 35
<그림 2> 2013년-2023년 공인 명예훼손 비중 ····· 3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문초록

중국의 명예훼손 소송과 공인 법리 연구

게 연 금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 론 홍 보 학 과

본 연구는 중국 법원에서 명예훼손 관련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판례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다양한 판례 분석을 통하여 법원이 공인의 판단 기준 및 범주, 유형 어떻게 판단하고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중국 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명예가 확실히 훼손된 사실이 있는지, 행위자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인과관계가 행위자의 주관적 과실에 바탕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인과 사인의 기준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단은 “특정 지역과 시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공인의 권리 제약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유형의 공인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중국 법원의 명예훼손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명예훼손 판결 특성 및 공인에 대한 판단 기준, 명예권 보호의 한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중국의 명예훼손, 공인과 사인, 공인 이론, 현실적 악의, 중국 법원 판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 I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중국의 사법재판 문서에 '공인'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 2002년 상하이시(上海市) 정안구 인민법원의 민사재판에서 처음 공인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간 중국 법원에서 이뤄진 명예권의 이분법적 모델을 사법실천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판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판즈이(范志毅) 소송문회신민보업그룹 명예침해사례,[2] 위추우(余秋雨)가 샤오샤린(肖夏林)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침권사례,[3] 광저우 화교건물개발회사 사례[4] 등이다. 이는 '중국개혁' 명예침해를 사례 대표적인 사례는 되었고 중국 사법부서가 공적 인물 이론중의 일부 원칙을 참고하여 사례 심리를 진행하는 돌파의 본보기로 볼 수 있다. 공적 인물의 명예침해에 대한 보호가 일반 시민보다 약한 사법 실천은 어느 정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언론 매체가 피고로서의 패소율이 극히 높은 어려움을 어느 정도 변화시켰다(陳志武, 2005[5]).

2002년 12월, 상하이시 정안구 인민법원(上海市靜安區人民法院)은 축구 스타 판즈이(范志毅)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판결했는데. 이 사례는 사법계와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이는 축구 스타 판즈이(范志毅)의 사회적 유명인 효과도 있었지만, 원고가 중국에서 법률로 확인된 최초의 '공인'이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사례는 중국 사법부에서 처음으로 민사재판문서에 '공인'이라는 법률개념을 등장시킨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사실상 공인의 명예권에 대한 제한적 보호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인에 대한 정당한 감독 과정에서 나타난 경미한

---

1) 공인의 개념 및 범주, 유형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 (2002) 上海市靜安區人民法院民事判決書 (靜民 (民) 初字第1776号
3) 2003. 北京市東城區人民法院民事判決書 (東民初第1807号), 北京市第二中級人民法院民事判決書 (二中民終字第9452号).
4) (2003) 广東省广州市天河區人民法院民事判決書 (天法民一初字第1832号).
5) 陳志武(2005). '언론, 법과 시장'에서 조사 연구한 사례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 언론의 명예권 소송에서 69.27%의 패소율을 보였으며, 법원이 언론에게 준 언론권의 가중치는 30%이고 명예권의 가중치는 70%라고 밝혔다. 원고가 정부 관계자일 경우 언론사의 패소율은 75.86%이다. 미국 일반 시민은 미디어를 상대로 약 24% 패소하고, 공인이 원고인 미디어를 상대로 약 4%의 패소율을 보인다. '미디어, 법률, 시장' 'M'. 베이징(北京), 중국정법대학 출판부. 73-7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명예훼손은 권리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판례로 볼 수 있다.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훼손' 요건의 인정 기준은 높아지고 있다(황초, 2009). 이 사건은 사법계에서 명예훼손 사례 중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현재 중국에는 공인 규칙의 사용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관련 법률이 없지만 그 핵심 사상은 이미 중국 사법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공인 규칙의 네 가지 주요 측면에 보면 즉 공인 신분 인정, 공익 규칙, 관용 의무 및 실제 악의 원칙이다. 미국 <뉴욕타임스> 설리번 판결의 '현실적 악의' 기준에 가까운 공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잘못된 언론 보도로 발생하는 명예훼손 현상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문제로 처음 다루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대법원(The U.S. Supreme Court)은 사법부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 중 하나를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설리번 사례 또는 <뉴욕타임스>대 설리번 사례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잘 못된 언론 보도로 발생하는 명예훼손 현상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문제로 처음 다루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판결은 공적 논점에 관한 논의는 제약 없이 활발하게 널리 행해져야 한다고 하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만일 명예훼손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하여 신문기사의 진실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언론사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체검열(selfcensorship)을 하게 되며 그 결과로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토론의 위축이 야기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라는 주관적 심리상태를 기준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뉴욕타임스' 판결에 의하면 공직자가 그 직무행위에 관한 명예훼손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얻기 위하여 표현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허위인가 아닌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보도를 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김민중, 2000).

그러나 '현실적 악의'는 중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직 중국 사회에서는 '공인'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에 대한 공인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현실적 악의'와 같은 원칙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인의 명예훼손 관련 법제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공인의 개념 및 범위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은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판결 과정에서 법관의 개인적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특성 및 구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관련 판결에서 법적 판단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吳飛, 2003).

따라서 중국의 명예훼손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중국 법원에서 공인의 사회적 신분 내지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공인에 대한 명예권은 어디까지 보호되고 있고,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세계적 추이를 판단해 볼 수 있는 판단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 서구권의 명예권 보호 관련 논의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 법원의 명예훼손 관련 판례의 특성 및 공인 법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 공인의 명예권 침해에 대한 사법 판결의 사례를 수집하고[6], 이 사례에 나타난 판결 경향 등을 분석하고, 명예훼손 소송이 체계화되어가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판례의 내용을 고찰할 속에서 중국 법원이 공인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공인의 범주 및 유형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명예권 법률 제도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6) 본 연구의 사례는 '재판문서망(裁判文书网)', '북대법보(北大法宝)' '무송안례(无訟案例)' '취법안례(聚法案例)'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민법원이 심리한 공적 인물 명예 소송을 중심으로 수집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Ⅱ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제 1 절 중국의 명예훼손 소송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있어 사람의 명예는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 오늘 날 많은 나라에서 법률을 통해 사람의 명예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인격권에 해당하는 중요한 권리이자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명예란 무엇일까. <블레이크 법률 사전>은 명예를 '한 사람의 품격이나 다른 특징에 관한 공통적이거나 일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한다.[7] <옥스포드 법률 대사전>은 명예에 대해 '명예란 사람의 도덕성, 능력과 그 밖의 품성에 대한 그의 명성, 명예, 신망 또는 신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이다. 불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고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8]

명예훼손 행위의 종류는 복잡하고 법률상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법률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각종 명예훼손의 전형적 행위를 규정해야 한다.[9] 미국의 학자 프로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고의나 과실로 인해 불법적으로 부당한 관념을 제3자에게 전파하여,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폄훼하거나, 그를 원망, 경멸, 비웃음 또는 그에 대한 존경, 사랑, 신뢰의 침해행위를 감소시킨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다.[10] 영국의 권위 있는 저서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잘못과 명예훼손 진술을 공개하는 것이며, 공개자는 이를 공개할 법적 권리가 없다.'[11] 중국에서는 민법통칙 '제101조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 행위를 요약할 수 있다. 행위자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모욕, 비방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의 명예에 훼손을 입혔다.'[12]

중국 명예권 보호의 발전 과정은 중국 공인 인물 명예권 보호는 정확한 파악을 하고, 그것을 전체 명예권 보호의 배경에 넣어서 이해해야 한다. 신중국이 성

---

7) Blacks law dictionary, west publishing Co. 1979 at 1171-1172.
8) 「英」戴維M. 沃克主編: <牛津法律大詞典>, 光明日版出版社, 1988年版, 第768頁.
9) New Zealand: Report of the committee on Defamation(1977)at pp.20-21.
10) William Prossor, law of Zorts(4th ed 1971)p.739.
11) Salmond & Heuston Law of torts(19th edition) Sweet & Maxwell 1987 pp.153
12) <民法通則> 第101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립된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법률에는 명예권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었다. 인권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명예권이 실제 생활에서는 중국공민에게 주는 인격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1986년에 중국은 법전의 성격을 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을 반포하였고, 1987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민법통칙>은 처음으로 명예권을 민사권리로서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이로써 중국은 명예권 민사소송의 법률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명예권은 입법을 통해 하나의 공식적인 권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명예권 사례가 많이 생겨났다. 민사소송에서 명예권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施大林, 2017). 근 30년 동안 중국의 명예권 입법과 사법은 아래와 같은 발전 단계를 겪었다.

입법이 발효된 초기 단계(80년대 말) 첫 단계는 비록 몇 년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기를 거쳤다. <민법통칙>의 시행 초기에 명예권은 그 권리 자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초과하여 거의 일반적인 인격권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13]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각 법원에 접수된 명예권 사례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1988년 상반기에만 뉴스 관련 명예권 침해 사례가 무려 200여 건에 달했는데 주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등 대도시에 집중되었다.[14] 중국 사법 통계 때문에 당시 명예권 소송의 실제 건수를 전반적으로 수집하고 집계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중국학계에서는 명예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명예는 시민의 일생에 수반되는, 그의 재능, 능력, 품성,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시민의 주관적 의지로 이행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안에 평가 대상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倪玥玥, 2008).

명예의 객관성은 세 가지로 표현된다. 첫째, 한 사람의 명예에 대한 평가는 피평가자의 의지에 의하지 않는 객관적인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피평가자가 어떤 불특정 주체가 그를 평가하거나 어떤 불특정 주체가 그를 평가하지 않는지 결정할 수 없고, 피평가자도 평가자의 평가 방식, 내용, 장소 등을 결정할 수 없다. 둘째, 한 사람의 명예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른다. 셋째, 한 행

13) 王利明、楊立新 <人格權与新聞侵權> [M] ，北京; 中國方正出版社，2010; 342.
14) 中國新聞法制研究中心編, <新聞法制全國學術研討會論文集>[G] 北京, 中國民主法制出版社, 199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가 명예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관한 객관적 요소를 비교적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5]

이 시기 최고인민법원의 업무보고에서 명예권 분쟁사례가 여러 차례 언급된 것과 중국 입법기구가 명예권 분쟁에 대해 작성한 많은 사법해석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88년 최고인민법원은 업무보고에서 '명예권 등 분쟁은 끊임없이 법원에 제소된다. 이러한 분쟁은 종종 복잡하며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고 있다.'[16]

1989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서 '민법 통칙이 시행된 이래 명예권 등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의 심리는 공민의 합법적 민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회 여론의 감독도 지지해야 한다.'[17]

90년대의 시장경제의 개혁개방과 함께 라디오、텔레비전 및 신문업의 번창한 발전에 따라 뉴스 매체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는 언론 매체의 권리 침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 매체의 오론감독이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명예권 보호 문제에 대한 토론에 관하여, 이것은 당시 학술상 '신문권리침해'로 요약되었고, 또한 <민법통칙>공포 실시 이래의 '기자 고소 열풍' 현상이라고도 불렸는데, 1992년에만 중국 각지 인민법원이 수리하여 심리하는 명예권, 저작권, 초상권 등 사례는 3823건으로 1991년보다 19.6%가 증가하였다.[18]

일반적으로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은 행위의 위법성, 손해사실의 존재, 위법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행위자의 과실 등 4가지가 있다. 명예훼손은 침해행위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도 4가지이다(蔣伶2005). 최고인민법원은 1993년의 <명예권 사례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 제7조 제1항에서 '명예권 침해책임의 구성여부는 피해자의 명예가 확실히 훼손된 사실이 있고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하며, 위법 행위와 손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행위자의 주관적 과실이 있는 것에 근거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19]

---

15) 張新宝. <名譽權的法律保護>,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1997版, pp16-17.
16) <最高人民法院公報> 1988年第2期.
17) <最高人民法院公報> 1989年第2期.
18) <最高人民法院公報> 1992年第2期.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명예권 소송 사례는 대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외에 점차 그 범위가 각지로 확대되고 있다. 원고 신분도 다양해졌지만 소송 사례의 원고는 대부분 관공서와 공무원이다. 그 중에는 경찰국, 법원, 국유기업의 공장장과 경리, 세무서 간부, 정부 농공부장, 수장 비서, 문화국장, 위생국장, 현위원회 서기, 시장, 경찰, 법관 등이 있다.[20]

이 외에도 법인, 특히 기업법인이 언론 매체와 언론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소송 관계가 복잡하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며 소송절차가 반복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특이한 현상은 재판의 지위에 있는 법원에서 판사가 '퇴장'하고 '공을 차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혀절단 사례'(割舌案)에 대해 경찰청 부국장은 전국 11개 매체를 동시에 법정에 고소했다.[21]

또한 류싱중(劉興中) <공인일보>의 명예권 침해 사례와 같이, 사례 소송 기간에 이 사례를 접수한 1심 구법원은 뜻밖에도 이 사례를 보도한 <민주와 법제> 잡지사를 법정에 고소하였고, 사법기관은 보기 드물게 원고가 되었다. 당시 해당 언론사의 통계에 따르면, 이 사례의 재심 공판을 전후하여 전국 최초의 공보소송 항소심 재심 사례를 보도한 언론사가 117개나 있었다.[22] 이 사례는 1심, 2심, 항소, 재심, 2심의 마라톤 연쇄 소송 절차를 거쳐서 근 6년에 걸쳐 중국 재판사에서 회피할 수 없는 유명한 사례가 되기까지 '흥미진진한' 사례이었다.

이와 동시에 뉴스 권리침해의 소송 보상도 갈수록 높아져 백위안에서 점차 만위안으로 높아졌으며, 심지어 십만위안 백만위안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민법통칙>(民法通則)만으로는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구체적인 조작 세칙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1993년에 <명예권 사례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약칭<해답>)[23]이 발행된다. 명예권 분쟁의 접수, 관할, 소송 주체, 침해 인정, 침해 책임

---

19) <關于審理名譽權案件若干問題的解答> 第7條.
20) 徐迅 <中國新聞侵權糾紛的第四次浪潮> [M] 北京, 中國海關出版社, 2002: 20.
21) 基本案情: 2000 年3月27日, 被告 <山西青年報> 發表新聞報道, 称原告山西省嵐縣公安局副局長楊旺元涉及一起刑訊運供 '割舌'事件, 幷爲此事件的主要責任人. <南方周末> 等10家新聞媒体相継報道轉載, 原告認爲 <山西青年報> 等侵犯其名譽權, 將11家新聞媒体告上法庭。山西太原市中級人民法院 2001年9月做出一審判決, 判令<山西青年報>. <南方周末> 等11家新聞媒体敗訴.
劉海濤 (2007). <中國新聞官司二十年> [M].北京: 中國广播電視出版社. 120.
22) 劉海濤. <中國新聞官司二十年> [M]. 北京: 中國广播電視出版社 2007 年版第 136 頁.
23) <關于審理名譽權案件若干問題的解答> 1993年頒布.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부담 방식, 부담 형식, 위자료 결정의 근거 등 11가지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施大林, 2017). 이 사법 해석 문건의 배포는 명예권 사례를 심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언론 매체가 정당한 언론 감시를 행사함으로써 언론의 명예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해답> 발표 이후의 몇 년 동안 중국 사회 경제도 급속한 발전 단계에 들어섰고, 명예권침해 사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형식이 다양화, 복잡화되면서 많은 사례들이 광범위하게 터져고 영향력도 매우 크다. 1998년에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새로운 문제 및 상황에 근거하여 <명예권 사례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약칭 <해석>)[24]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법학계에서는 명예권 사례 심리에 필요한 언론 매체의 '특허권 항변'으로 해석하기도 한다(施大林, 2017).

1998년에 발표한 <해석>은 1993년의 <해답>보다 더 더욱 발전과 심화를 이뤄졌다. 이 두 문건은 지금까지 중국 최고법원이 명예권 사례에 대해 내린 가장 체계적이고 세밀한 사법 해석이다.

또한 2001년 2월,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상 권리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책임 확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약칭 <해석>)[25]을 발표하였다. 2001 <해석>은 민사상 권리훼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였는데, 그 본질은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확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상 3건의 사법해석은 명예권 분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국 명예훼손법의 주요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施大林, 2017).

최고인민법원은 일련의 사법해석을 공포함과 동시에, 지방법원이 신문의 권리침해 소송사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수많은 난제 대한 지시에 대하여 일련의 사법해석을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뉴스 비평과 인격권(施大林, 2017), 명예권 사법 보호 방면에서 더욱 조화로운 경로 탐색과 중대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후반, 중국의 명예권 소송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전과정을 겪었는데, 명예권 분쟁이 대량으로 분출된 사실은 사회, 공민, 언론 매체가 시대의 변천

24) <關于審理名譽權案件若干問題的解釋> 1998年頒布.
25) <關于确定民事侵權精神損害賠償責任若干問題的解釋>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의 변화를 반영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극히 일부 계층의 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사회적 유명인사들이 점차 일반 민중 계층에서 파생되었고, 그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였다. 각급 법원에 접수된 명예권 침해 사례 중에서, 대부분의 사회적 영향이 큰 사례는 모두 사회 명사들의 명예권 분쟁이다. 당시의 학술계, 언론계에서는 위영징(魏永征), 진지태(陳志泰), 왕리명(王利明), 장신보(張新宝) 등 일부 학자들이 서양 대중전파법에서 공인 명예권에 대한 특수 규제의 제한보호 원칙과 사법 이념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추앙하였다(施大林, 2017). 학자들, 변호사, 법관들의 노력으로 2002년부터 '공인'의 개념과 이론의 일부가 중국의 사법 재판문서에 실리기 시작하였다.

제 2 절 공인 명예훼손

1. 공인 개념의 등장

공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제도와 이론은 1960년대 미국에서 비롯되었다. 60년대 이전에 미국은 명예권 보호에 있어서 주체 신분의 구별이 없었으며, 더욱이 공인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이 제도와 이론의 확립은 오랜 발전 시기를 거쳤다, 미국은 다년간의 판례 실무를 통하여 현재 비교적 완전한 공인 명예권에 대한 법률 제도와 이론을 형성하였다(施大林, 2017).

공적 인물(public figure) 법리는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Co. v. Sullivan)[26] 사례에서 시작되었고, 일련의 후속 판결을 통해 세분화되고 정교화 되면서 명예훼손 소송의 주요 법리로 정립되어 왔다.

1) 설리번 사례(Sullivan)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의 시정 위원이자 경찰서장인 설리번은 1964년 뉴욕타임스가 흑인 민권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부정당한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했다며 뉴욕타임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26)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76 U. S. 254(196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청구했다.[27] 주 법원은 설리법(Sullivan)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뉴욕타임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설리번은 공적인 관원에 속하며, 피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을지라도, 원고는 언론 보도에 '실제적 악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28]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 설리법 사례는 세 가지 면에서 두드러진 기여를 하였다.

(1) 언론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 지위를 공적 공무원과 비공적 공무원으로 구분하는 최초의 공적 공무원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2) 실제적 악의 원칙을 처음으로 제기한다. 실제 악의적 원칙은 이후 여러 공인 인명 소송 사례에서 '공정한 댓글 항변의 원칙'을 확장하여 적용되고 있다.[29]

(3) 입증 책임은 원고가 지며, 언론 비방 사례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한 실제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설리번사례의 고전적인 판례는 공인이라는 개념의 출현을 전제로 한 기념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魏永征, 2003).

2) AP통신 대 워커 사례(Associated Press v. Walker)

커티스 출판사 대 버츠[30](Curtis Publishing Co. v. Butts)에 대한 소송 사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번 사례에서 처음 언급된 공적 관리의 개념을 공적 인물로 확장하여 해석하였다. 당시 연방대법원의 여러 판사들은 이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과 해석을 하였지만, '공인이란 관점과 행위가 공공문제와 공공 사례에 관계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며, 개입된 사례의 해결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 비교적 일치된 견해였다. 비록 워커[31]와 버츠 두 사례 원고가 모두 공공기관 관원은 아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두 원고가 어느 정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라고 판단하고, <뉴욕타임스> 사례에서 제시된 '현실적 악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27)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76 U. S. 254(1964).
28)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76 U. S. 254(1964).
29) 魏永征. <西方傳媒的法制管理和自理>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3: 68.
30)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 63 (1967).
31) Associated Press v. Walker,388 U. S. 130(196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거츠 대 로버트 웰치 사례(Gertz v. Robert Welch)

1974년 거츠 대 로버트 웰치 사례[32]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례에 이은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공인의 개념과 유형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여 완전한 의미의 공인과 제한된 의미의 공인으로 구분한다. 둘째, 공인과 일반 공민 사이의 이분법을 창안하여, 언론 매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과 다른 단어를 발표했을 때, 그 대상이 공인이 아니라면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주장하여 면책할 수 없다. 일반 시민의 취약한 지위는 공인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張金璽, 2016).

미국의 인정하는 공인 이론과 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은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사례에서 발전했다. 공인이론은 설리번 사례에서는 공직자를 포함시켰고 베어(Bear) 사례에서는 하급 공무원까지를 공인의 범주를 포함시켰다. 1967년 버츠(Butts)와 워커(Walker)[33] 사례(Curtis Publishing Co. v. Butts: Associated Press. v. Walker)에서는 사인을 포함한 공적인물로 1971년 로젠블럼 대 메트로 미디어(Rosenblum v. Metromedia Inc)[34] 사례에서는 공인 및 사인의 구분 없이 공적 관심사(matter of public concern)까지 현실적 악의 원칙 적용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거츠(Gertz v. Robert Welch., Inc)[35] 사례에서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현실적 악의를 공인에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공직자에서 공적 인물 및 공적 관심사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공인에 대한 개념과 원칙을 정립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언론 자유를 공인의 명예 권리보다 우월한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재진, 1999; 윤성옥, 2007; 이재진·이창훈, 2010).

미국은 판례법의 다년간의 실천을 통하여 현재 비교적 완전한 공적 인물 법학이론을 형성하연다. 그 핵심은 첫째, 완전한 의미의 공적 인물(public figure forall purpose) 이러한 인물은 매우 높은 대중적 지명도와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 권력기관에서 중요한 공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공적 업무에

32) Gertz v. Robert Welch. Inc.,418 U.S. 323(1974).
33)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Associated Press. v. Walker, 388 U.S. 130 (1967).
34) Rosenblum v. Metromedia Inc., 403 U.S. 29 (1971).
35)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지대한 권리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활동과 행동은 모두 대중의 알 권리와 관련된 문제이다.[36]

둘째, 제한적 목적의 공인(Limited purpose public figure)으로서 주로 문예계, 영화, 텔레비전, 스포츠 스타 등 사회 저명인사이다. 이러한 인물은 자신이 관련된 사례의 해결에 일정한 영향력과 미디어를 이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행위는 대중의 흥미와 대중의 이익에 관련되지만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37]

셋째, 비자발적 공인(Public figures involuntarily), 또는 (우연한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류는 원래 일반 시민으로서, 그 행위가 대중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지 않으며, 더욱이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지 않으면서, 어떤 돌발적인 특수한 사례로 인해 수동적으로 때때로 어떤 공공 사례의 쟁의에 휘말리는 부류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적다.[38]

공인 보호의 입법 원칙 고도는 공인의 명예권에 대한 약한 보호, 즉 조건부 제한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언론 매체의 권리 침해 소송에서는 원고의 신분에 따라 다른 보호가 주어진다. 널리 퍼지는 정보의 내용이 공적 인물에 관한 것일 때, 법의 저울은 사회 공공의 이익과 대중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더 기울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언론기관이 일반과실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를 허위로 보도하였더라도, 법률은 이를 포용하고, 그에 대한 훼방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공인을 비판할 때 언론의 절대적인 자유권을 수호한다. 공적 인물이 언론 매체 훼방을 기소할 때 적용되는 재판 기준은 일반 시민과 확연히 다르다. 공인은 언론 기관이 '실제적 악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입증 책임을 져야 승소할 수 있다. 언론사는 원고가 공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항변할 수 있다(施大林, 2017).

언론의 어떤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대법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표현의 내용과 표현의 방식뿐만 아니라 표현의 공익성도 살펴

36)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51 (1974).
37)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51 (1974).
38) 王利明. <公衆人物人格權的限制和保護>[J]. 中州學刊, 2005: 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봐야 한다. 또 표현이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표현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를 보아야 한다(김경호, 2023).

중국에서는 공인을 공중인물(公衆人物)이라 지칭한다. 공중인물 원칙은 민중의 알 권리와 공민(公民) 개인의 사생활이 충돌할 때 이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공민들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대중의 알 권리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는 원칙을 의미한다(竇衍瑞, 2005).

중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언론 기사 내용을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해 소송하는 추세가 높아졌다, 즉 '고기자예(告記者熱)[39]'이 발생하였다. 그 후로 중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魏永征, 1994). 중국 언론학계와 언론은 이러한 새로운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학계, 판사, 변호사, 정치인과 협력하여 1991년, 1993년, 1996년에 걸친 세 차례의 '뉴스의 법적 쟁점과 법제 책임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다. 1991년의 첫 번째 학술 세미나에서 언론인 진태지(陳泰志)는 미국의 '설리번 케이스'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의 공직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설리번 케이스'의 '현실적 악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陳泰志, 1991).

하위방(賀御方)은 미디어가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사들과 보도 편집의 처리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 규범과 표준 작업 절차를 고의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賀御方, 1998). 이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실적 악의 원칙과 공인 개념은 중국의 명예훼손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에서 공인 관련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중국의 공인 관련 연구는 공인이론과 현실적 악의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 유형, 그리고 공인의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유형으로 구분된다. 여나(呂娜)는 중국의 법규에 공인 개념을 도입하고 미국의 현실적 악의 원칙을 참고하여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呂娜, 2003). 오비(吳飛) 또한 '설리번 케이스'를 언급하며, 정부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현실적 악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吳飛, 2003). 위영정(魏永征)은 중국 미디어 명예훼손 사례에서의 공인 개념을 설명했는데 연구 결과에

39) '기자들이 고소한다'는 의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미디어는 정부 공무원의 명예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현실적 악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魏永征, 2007). 한편 중국에서는 매체 노출에 대한 자발성 여부, 즉 자원성이 중요한 공인 결정 요인으로 간주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공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王利明, 2005; 于淼·楊燕川, 2006; 郭倩倩, 2007).

2. 공인의 유형

언론의 자유란 모든 사람이 구두 또는 서면, 기타 형식으로 공공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발언과 사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의 하나이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의미이다. 세계 최초로 출판의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한 1789년 프랑스의 '인권과 시민 선언'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저술과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이 있다.

세계 헌법 전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111개 국가의 헌법 또는 헌법 문서 중 102개 문서가 표현의 자유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헌법도 마찬가지다. 언론의 자유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위한 인류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언론 자유의 본질은 언론 매체의 비판의 자유이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가 언론 자유의 독립적 지위를 확립한 것과 같이, 입법, 사법, 행정 이외의 '제4의 권력'이 되었다. 사회 이익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보장하려면 언론 매체의 조사 보도와 여론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권리 침해 소송을 가장 쉽게 당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언론 자유도가 높고, 국가 경제와 현대화도 높으며, 언론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명예권이라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권리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률의 역할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으며, 공인의 명예권도 마찬가지이다.

완전한 의미의 공인이든 제한된 의미의 공인이든, 그들은 일반 시민보다 더 많은 권력과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그들은 공권력의 대표자이다. 현대 사회에서 공권력은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양날의 칼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만약 제약하지 않는다면 몽테스키외가 말했듯이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 그들은 권력을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만고에도 쉽지 않은 경험이다.' 그러므로 공인의 명예권에 대하여 특수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공중의 알권리, 비판권, 감독권을 확대함으로써 '권리'로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여론 감독은 중국 특색을 가진 어휘로, 언론 매체가 '대중의 대변자'로서 뉴스, 평론을 발표함으로써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종합적인 방면에 대해 비판하고 감독하는 권리와 기능을 가리킨다. 엄밀한 의미에서 언론 감시는 정확한 법적 개념이 아니며, 언론 매체가 비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언론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 그것은 국가와 시민 사회의 상호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 감시의 가치는 언론 매체를 통해 공권력의 운영과 부패와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론 감시는 또한 비판, 사회의 추악한 현상을 드러내고 폭로하며, 사실의 진상을 환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양호한 사회도덕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의 민주법치화 과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여론 감독 제도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은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중에게 공인에 대한 더 많은 여론 감독권을 부여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공인의 명예권을 특수하게 규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의 공평과 조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1974년의 '거츠 대 로버트 웰치'[40]은 공인을 전면적, 제한적, 비자발적 공인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1) 전면적 공인: 사회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권력 인지도와 영향력이 매우 큰 사람, 예를 들면 정부 관료, 슈퍼스타, 각계 유영한 사람들이다.

(2) 제한 목적성 공인: 원래 사회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어떤 공공 쟁의에 뛰어들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쟁의에서 벗어나 다시 일반 시민이 된 사람이다.

40)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197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비 자발적 공인: 본래의 이름을 알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이나 대중의 흥미와도 무관하고 어떤 특별한 사례로 우연히 수동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은 사람이다(曹宋琪, 2019).

또한 미국 법원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인물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출직 공무원과 국가적 공직자로서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후보자와 같은 고위공직자(public official)가 공인으로 분류된다. 둘째, 제한된 공적인물로 제한적 공적인물(limited public figure), 논쟁사안의 공적인물(vortex public figure), 타의적 공적인물(involuntary public figure), 자발적이며 비정치적 공적인물과, 우연한 사건으로 비정치적 공개된 공적 인물에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종교 지도자, 사회운동가, 기업인(예: 빌 게이츠),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 언론사 칼럼니스트, 비평가, 직업적 범죄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이승선, 2007; 이재진·이창훈, 2010).

한국의 경우 공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공인의 인격권 보다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발전해 왔다(이재진·이창훈, 2010)).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판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여전히 공직자나 공인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남용한다는 주장이 있다(배금자, 2002). 이러한 현상은 법원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사례별로 비교형량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 경우 어떤 종류의 표현이 법원에서 용인될지 거부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문재완, 2004). 이는 법적으로 공인 이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중국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존재한다(吳飛, 2003). 그 결과, 공인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언론 자유와 공적 인물 간의 갈등을 조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재진, 2009).

한상범이 미국식 공인 개념을 수용하여 공인 유형을 처음 분류하였다. 그는 정치인(국회의원, 국무의원, 후보, 혹은 특정 직책을 맡은 자), 공무원(행정부의 다양한 직책을 맡은 일반직 직원부터 별정직인 법관과 검찰관, 교원까지), 그리고 공적 인물(교원, 변호사, 의사, 약사, 언론인, 성직자, 문화예술인), 경제사회 지도자, 유명인 등으로 공인의 유형을 분류하였다(한상법, 1986). 이재진과 이성훈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공인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미디어에 대한 접근 용이성과 개인의 행위가 사회의 공적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도를 고려했다. 이들은 정치인, 공무원, 공적 인물, 경제 및 사회 지도자, 그리고 유명인 등 총 5개의 유형으로 공인을 분류했다(이재진·이성훈, 2003).

한위수는 정치인, 정치인의 친인척, 공무원, 공무원의 친인척, 기업인, 연예인, 언론인 등을 공인으로 구분하였다(한위수, 2002). 이승선은 공인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분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언론 노출의 자발성과 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 여부 등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자발적-정치적, 자발적-비정치적, 비자발적-정치적, 비자발적-비정치적, 유연한, 경계 영역적 인물, 사인 등 총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이승선, 2017). 이재진과 이창훈은 국내에서 수행된 다양한 공인 분류 연구를 종합하여 정치인, 공직자, 연예인, 스포츠 선수, 기업인, 언론사/언론인, 사회운동단체, 종교 지도자, 범죄자, 유명인 등이 공통적으로 공인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이재진·이창훈, 2010).

중국의 공인에 대한 분류 기준은 더욱 다양한다(曹宋琪, 2019).

(1) 사회 자원점 유형: 권력 자원형, 주의력 자원형, 지력 자원형, 부자 자원형에 나눌 수 있다.

(2) 대중 관심의 유형: 정치 성공인, 사회 성공인에 나눌 수 있다.

(3) 활동 분야: 정부 관원, 영화 스타, 스포츠 스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 주관적인 의사: 자발적공인, 비자발적 공인에 나눌 수 있다.

(5) 시간대: 생전(生前) 공인, 사후(死后) 공인에 나눌 수 있다.

(6) 연대: 역사적 공인, 당대 공인에 나눌 수 있다.

중국에서 공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왕리명(王利明), 우묘와 양해천(于淼·楊燕川)에 따르면, 공중인물은 두 가지 차원으로 형성된다. 자원성 공중 인물과 비자원성 공중 인물로 나누다. 자원성 공중 인물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중 여론에 참여하며,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하는(자발적인) 개인을 지칭한다(王利明, 2005; 于淼·楊燕川, 2006). 예를 들어 정치인, 정부 관원(공무원), 영화배우, 가수, 유명인, 작가, 스포츠 스타 등은 자원성 공중인물에 속하다. 반면에 비자원성 공중인물은 법률을 어길 경우나 사회의 공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사회 각계의 관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일시적으로 불러일으킨 사람을 지칭하다. 우묘와 양해천(于淼·楊燕川)은 자원성 공중인물이라도 정부 관원(공무원), 정치인들은 큰 사회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 등 다른 자원성 공중인물보다 경제적인 수입, 사생활 등에 대해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于淼·楊燕川, 2006). 한편 원천천(郭倩倩)은 이전 연구의 틀을 확장하여 공인의 범위를 다양하게 제안했다. 그는 지명도와 영향력을 기준으로하여 공직자 및 공익 조직의 리더를 자원성 공중인물 중 정치적 공적인물로 정의했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 문학가, 저명학자, 우수 근로자, 전과자, 문학계, 연예계, 스포츠계 스타을 자원성 공중인물 중 사적 공중인물로 분류했다(郭倩倩, 2007).

3. 공인과 사인, 이분법적 법리

미국에서 명예훼손 행위는 전통적으로 보통법상의 엄격책임주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한 반면,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표현 내용의 진실성 또는 해당 행위가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했다. 이는 언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일반에 대한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1964년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41]을 통해 미국 연법대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은 제한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이러한 토론은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42]

또한, 자유로운 토론에서는 때로 잘못된 표현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숨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 한다[43]는 주장을 통해 '사인'과는 다른 법리, 즉 현실적 악의의 법리가 적용되는 대상으로서의 공인(公人) 개념을 제시하였다(김봉수, 2013).

1974년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44]에서 ①공인은 효과적인 커뮤니케

41)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56-261 (1964).
42)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70 (1964).
43)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72 (1964).
44)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션 수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사인에 비해 잘못된 보도에 대응하기가 용이하며(자력구제의 용이성). ②공인은 사인보다 공적인 관심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를 위한 욕구와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공적인 비판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며, 명예훼손에도 더 노출돼 있다(위험의 수용성)는 점을 강조하여,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는 이유 및 그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였다(김봉수, 2013).

Dun & Bradstreet 판결 이후, 명예훼손 법리는 '현실적 악의' 원칙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되었으며, 이는 주로 신분표지 '공인'과 내용표지 '공적 관심사'의 결합에 기초하고 그 정도에 따라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약간의 이론적 수정과 변형이 있었으며, 편의를 위해 조합과 역학관계를 정리한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김봉수, 2013).

<표 1> 2가지 기준의 조합에 따른 적용 법리의 차이

내용기준+ 신분기준	공적 관심사와의 관련성	
	有	無
公人 (=공직자+ 공적인물)	1. 원고는 상대방의 현실적 악의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만 보상적이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New York Times 및 Gertz 판결]	2. 원고가 '공직자'의 경우에는 비록 사적 문제일지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Garrison 판결[45)]]
(공적인물이 아닌 순수한) 私人	3. 원고는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실제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Gertz 및 Hepps22) 판결] → 다만, 추정적·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 악의까지 입증해야 한다. [Gertz 판결]	4. 원고가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 및 징벌적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다. [Dun & Bradstreet 판결] → 결과적으로 엄격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출처: 김봉수 (2013). 공인(公人)에 대한 명예훼손법리의 함의(含意)와 그 한계 - 미국의 '공인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 [제1영역 - 공인이론(현실적 악의법리)의 적용]은 공인이론이 피해자가 공직자 또는 공적인물에 해당하고 문제의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전형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공인이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

45) Garrison v. Lousiana, 379 U.S. 64 (196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공인)가 피고(언론기관)의 현실적 악의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제2영역]은 원고가 공인(공직자) 중에서 공적 관심사와 무관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인이론(현실적 악의 법리)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공직자' 신분표지가 공인이론의 적용과 관련하여 활발한 역할을 하며, 반면에 '공적 인물' 표지는 소극적인 표지로 작용한다. 세 번째로, [제3영역 - 완화된 입증책임전환 법리의 적용]은 피해자인 원고가 '공적 인물' 개념에 속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사인(私人)이지만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경우다. 이 경우 원고는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상대방의 과실'만을 입증하면 된다. 네 번째로, [제4영역 - 엄격책임주의 원칙의 적용]은 피고(행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엄격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이를 통합적으로 보면 '공직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내용(공적 관심사)'보다는 '신분(공인)' 기준이 공인이론의 적용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내용(공적 관심사)' 기준이 공인이론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요한 표지로 작용한다. 이러한 '공적 관심사' 기준의 소극적 기능은 신분표지가 부재(不在)할 수밖에 없는 사인(私人) 영역에서 보다 두드러진다.

하지만 앞서 비판한 바와 같이 '공적 인물'이 개념상 '공적 관심사'에 터잡고 있는 이상, [제1영역]과 [제3영역]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특정한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적 인물로 취급되는 '제한적 공적 인물'과 관련성이 없지만 문제가 되는 표현 내용이 공적 관심사와 연관이 있는 [제3영역]의 사인(私人)이 실제로 현실에서 구별되기 어려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러한 구별의 어려움과 한계는, Gertz 판결 이후 '제한적 공적 인물'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3건의 재판에서 연방대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미연방 대법원이 '제한적 공적인물'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공적인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서 사인을 '제한적 공적인물'로 간주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되면 제1영역에 해당하여 공인이론(현실적 악의의 법리)이 적용되므로('순수한' 사인의 경우[제3영역]과 비교했을 때) 피해자인 원고가 지나치게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중국에서의 공인 논의

현재 중국 법률에는 공인에 대한 신분적 유형이나 분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존의 사법적 판례를 통해 공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 학계에서도 공인의 신분 인정과 분류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자화(劉子華)[46] 사례에서 법원은 '유자화의 친척이 유자화 사망 이후 자체적으로 기념문집과 화첩을 편찬하고 학술연구소를 설립했으며 현지 정부도 기념행사를 홍보한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회공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유자화 공인의 신분을 그와 관련된 홍보 행위와 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인정했다. 장톈숴(臧天朔)[47]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장톈숴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가수로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공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징잉(張靚穎)[48] 사례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슈퍼걸(超級女生)이 히트한 이후 원고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해당 연예인의 말 한마디에 대해 팬들이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 두 사례 법원은 원고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본인의 지명도로부터 그 공인의 신분을 판단하였다. 중국의 사법 관행에서 공인의 신분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직업이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는지 사회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지의 기준에서 비롯된다.

학계에서도 공인의 신분 인정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양스린(楊士林)는 '공인이란 공직자 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민중들에게 알려지고 관심 있게 행동하며 사회적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주장했다(楊士林, 2003). 왕리밍(王利明) '공인은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정부 공직자, 공익조직 지도자, 문예체육계의 스타, 저명학자, 모범근로자 등 유명인사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王利明, 2012). 학자들의 토론을 통해 개인이 공인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조건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 여부임을 알 수 있다. 공익을 공인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학자도 있

46) 北京市第二中級人民法院 (2006) 二中民初字第 08419 号判決書.
47) 北京市第二中級人民法院 (2002) 二中民終字第 397 号判決書.
48) 上海市靜安區人民法院 (2006) 靜民一 (民) 初字第 2845 号判決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만 그런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공인은 비록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여전히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李新天·鄭鳴, 2005).

공인은 개인의 신분에 대한 판단이고, 공공의 이익은 공인과 사회의 연결고리로 공인이 인지도가 높거나 공공의 이익에 직접 관여할 경우 공익에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사법 실행과정과 학자들이 공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합해 보면, 공인은 특정 지역과 시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사회의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인의 지명도는 양성과 악성을 포함한다. 이 개념에서 지역 범위는 공인의 사회적 지명도를 결정하고 시간 범위는 공인의 신분 획득이 돌발사례나 장기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중국의 사법 관행에는 공인의 분류가 부족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학자들은 일정한 연구를 하고 있다. 왕리밍(王利明)는 '중국에서 공인을 정치공인과 사회공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익, 공익, 여론 감독 문제를 더 많이 다루고 후자는 주로 대중의 관심사를 포함한다.'고 말했다(王利明, 2012). 무밍춘(穆明春)은 공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자원에 따라 권력자원형 공인, 주의자원형 공인, 부자원형 공인, 지적자원형 공인으로 분류한다(慕明春, 2003). 장밍안(張明安)은 정부 관료의 개념을 내세워 공인을 정부 관료, 준정부 관료, 영화 스타, 스포츠 스타 등으로 분류했다(張民安, 2012).

직업이나 자원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공인을 분류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공인규칙의 판단에는 적용할 수 없다. 첫째, 일부 학자들은 정부 관리와 공인의 형성 방식, 사회적 영향 및 권리 제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직자는 선거나 적법한 임명을 통해 선출되며 그 영향력은 공권력에서 비롯되고 반면 공인은 여론에서 형성되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楊士林, 2003). 둘째, 위의 분류도 카테고리가 상세하지 않아 중복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중의 관심을 얻는 것은 공인의 일반적인 특징이며 많은 공인이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자원을 통해 분류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공인규칙의 적용에서 공인의 신원을 분류하는 주요 역할은 공인의 권리에 대한 제약이 공인의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얻지 못하면 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의 규칙에 대한 연구에서 공인의 신분 분류는 의미가 없어지고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장신바오(張新宝) 교수는 공인을 정의할 때 개인의 인지도 획득에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張新宝, 2004), 치샤오단(齊曉丹)은 공인을 분류할 때 이 요소를 참고하여 공인이 될 주관적인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인을 능동적 공인과 수동적 공인으로 구분했다. 능동형 공인은 스스로 공인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으며 지명도 획득에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태도 또는 그 자체가 이미 공인의 감독 및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반면, 수동형 공인은 스스로 공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며 특정 공공 사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의 초점이 된다(齊曉丹, 2015).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공인의 분류 기준으로 삼으면 공인의 유형을 보다 포괄적으로 포괄할 수 있으며 공인의 인격권을 차별적으로 제한할 때 더 나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3 절 중국 법원 체계 고찰

1. 중국법원 체계

중국의 법원체계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및 최고법원으로 4급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등급의 법원이 산재한다. 중국의 민사소송제도가 한국과 명백히 다른 점은 이른 바 급별관할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제1심 민사사례를 기층인민법원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원에서도 취급하기 때문에 급별관할의 개념이 있다.

1)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의 제1심 관할(管轄)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은 법률이 별도로 정하는 사례 이외의 일체의 민사사례를 제1심으로 재판한다(법조법 제21조 제1항, 민소법 제18조). 법률에 따라 다른 법원에 제1심 재판권이 부여된 것으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 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 및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할(管轄)로 된 것과 전문인민법원(專門人民法院)의 관할(管轄)로 되어있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이외의 일체 민사사례는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과 그 파출인민법정(派出人民法庭)의 관할(管轄)에 속한다. 다만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은 자기가 수리한 사례가 중대하여 상급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으로 이송(移送)할 수 있다(법조법 제21조 제2항).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은 재판사례 이외에도 재판을 요하지 않는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례를 취급하며 인민조해위원회(人民調解委員會)[49]의 직무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2)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의 제1심 관할(管轄)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은 ①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이 이송(移送)한 사례, ②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의 판결(判決), 재정(裁定)에 대한 상소(上訴) 사례, ③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례(抗訴事件)[50]을 재판하는 이외에 다음과 같은 3종류의 민사사례를 제1심으로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19조).

(1) 중대(重大)한 섭외사례(涉外事件)(민소법 제19조 제1호)

중대한 섭외사례(涉外事件)의 의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약간의문제의견(民事訴訟法若干問題의견(意見))> 제1조[51]가 '민사소송법 제19조 제1호의 중대한 섭외사례라 함은 소가(訴價)가 다액(多額)인 사례,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례, 혹은 외국거주 당사자가 많은 사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래 시행법(試行法) 시대[52]에는 모든 섭외사례를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 이상의 법원의 관할(실

---

49)人民調解委員會는 전 중국의 도시, 농촌, 기업 내에 설치되는 民間的 紛爭解決機構이며 여기서 일단 調解를 시도하여 調解가 성립하면 調解書를 작성하여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에 보내어 보관하며,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은 인민조해위원회(人民調解委員會)의 활동을 지도하기도 하며 調解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바로 잡기도 한다. 민간기구의 활동이므로 調解書는 旣判力이나 執行力을 가지지 못한다.

50) 중국의 민사소송에서는 인민검찰원이 심판활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민소법 제14조), 이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민사 제1심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을 抗訴라 한다 (민소법 제185조). 중국의 불복제도의 용어에 관하여는 前揭, 孫漢琦、 중국의 裁判機關과 審級制度에 관한 연구. 260면 참조.

51) <민사소송법약간의문제의견(民事訴訟法若干問題의견(意見))> 1992년에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공포한 規範性 文件으로 정식 명칭은 <關于適用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若干問題的의견(意見)>이다. 이 의견(意見)은 마치 우리의 민사소송규칙과 같이 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과 더불어 민사소송에 관한 중요한 法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모두 '의견(意見)'이라 칭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로는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로 하고 있었으나 대외무역의 증가에 따른 해안지구(沿海地區)의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의 부담가중, 시행법시대 9년간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의 재판능력이 향상된 점을 고려하여 1991년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이를 중대한 섭외사례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섭외사례는 현재는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이 제1심을 담당한다.[53]

(2) 관할지역(管轄區域)內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민소법 제19조 제2호)

여기의 관할지역(管轄區域)은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의 관할지역(管轄區域)을 말하는 것으로, 사례의 처리결과 발생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이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의 관할관할지역(管轄區域)을 넘어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의 관할지역(管轄區域) 전체에 미치게 되는 사례를 말한다. 중대한 영향의 의미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소가(訴價)의 다액(多額), 사례의 복잡여부, 당해지역에의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예컨대 경제분쟁(經濟紛爭)의 소송단위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이 1심을 담당한다.[54]

(3)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의 관할(管轄)로 정한 사례(민소법 제19조 제3호)

현실적으로 복잡한 사례나 신종사례의 출현에 대비하여 명확한 법률의 규정을 완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에 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으로 현재는 다음과 같은 사례는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이 관할(管轄)하도록 정하고 있다.

(4) 특허분쟁사례(特許紛爭事件)

특허사례(特許事件)은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의견(意見) 제2조에 따라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이 제1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사례 중 심결취소사례(審決取消事件)은 베이징시(北京市)의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이 담당하며, 특허침해사례(特許侵害事件)은 각 성 직할시 자치구의 정부소재지의 중

52) 중국의 민사소송법은 1982년에 시행법(試行法)(시험적으로 시행하는 법)을 제정하여 9년간 실험적으로 적용하여 오다가 1991년에 정식으로 제정되었다.
53) 前揭, 梁書文-回 明-楊榮新 主編, 民事訴訟法及配套規定新釋新解. 182면 참조.
54) 前揭, 江偉 主編, 民事訴訟法, 88면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과 중경. 대련 청도 및 각 경제특구에 설치된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이 제1심을 담당한다.[55]

(5)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계된 중대한 사례

이 사례는 섭외사례(涉外事件)으로 보지는 않으나 역사적·현실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중 중대한 것은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의 관할(管轄)로 하고 있다.

3) 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의 제1심 관할(管轄)

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은 ①하급인민법원(下級人民法院)이 이송(移送)한 사례, ②하급인민법원(下級人民法院)의 판결(判決), 재정(裁定)에 대한 상소(上訴)事件, ③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례(抗訴事件)을 재판한다. 이 이외에 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은 그 관할지역(管轄區域)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제1심으로 재판한다(민소법 제20조). 여기의 관할지역(管轄區域)은 성은 직할시 및 자치구를 가리키며 이와 같은 구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만을 제1심으로 다루게 된다. 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은 지방의 최고법원으로서 그 주요임무는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上訴)와 항소사례(抗訴事件)의 재판과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 및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의 재판사무의 감독이기 때문에 제1심의 재판은 극히 한정된 사례만을 취급하게 된다.[56]

최근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즉 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이 제1심으로 재판할 수 있는 사례의 최저 소가(訴價)를 각 성은 직할시, 자치구로 별도로 정하는 동시에 매년 수리할 수 있는 사례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

---

55) 前揭, 梁書文-回 明-楊榮新 主編, 民事訴訟法及配套規定新釋新解, 183면 참조.

56)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關于各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受理第一審民事. 濟糾紛案件問題的通知> (1999년 4월 9일 공포). 이 통지 제1조에 따르면 예컨대 베이징(北京), 상해. 광동의 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이 제1심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재산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사례는 소가(訴價)가 1억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매년 10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제3조에 의하면 소가(訴價)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관할관할지역(管轄區域)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례는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허가를 얻어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가(訴價)要件을 갖춘 사례가 10건이 넘는 경우에는 11번째 사례부터는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으로 가야하느냐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上揭書, 201면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4)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제1심 관할(管轄)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①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 및 전문인민법원(專門人民法院)의 판결(判決)과 재정(裁定)에 대한 상소(上訴)事件, ②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檢察院)이 심판감독절차(裁判監督節次)에 따라 제기하는 항소사례(抗訴事件), ③법률, 명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며(법조법 제33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1심으로 재판한다(민소법 제21조).

(1)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동조 제1호)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의 수는 극소수일 것이나 예컨대 그 사례를 처리해 줌으로써 지방의 각급 인민법원(人民法院)의 재판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시범적인 재판과 같은 것은 여기에 속할 것이다.[57]

(2)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스스로 심리할 것으로 인정한 사례(동조 제2호)

이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스스로 심판할 것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례를 제1심으로 다를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이를 통하여 전국의 법원을 장악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사례의 종류는 물론 사례가 이미 지방의 각급 인민법원(人民法院)에 계속중(係屬中)인지의 여부도 묻지 아니한다.[58]

5) 전문인민법원(專門人民法院)

전문인민법원(專門人民法院)의 관할 사례는 일반의 인민법원(人民法院)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현재 민사사례를 다루는 전문인민법원(專門人民法院)에는 철로운수법원(鐵路運輸法院)과 해사법원(海事法院)이 있다. 철로운수법원은 ①철로화물 운송계약분 쟁사례(運送契約紛爭事件), ②철로 여객 및 수화물 운송계약의 분쟁사례 등 12가지의 철도운송과 관계된 사례를 다룬다.[59] 철로운수법원(鐵

57) 前揭, 江偉 主線、 民事訴訟法, 89면 참조.
58) 上揭, 江偉 主箱, 民事訴訟法, 89면: 梁書文'回 明'楊榮新 主編, 民事訴訟法及配套規定新釋新解、202-203면 참조.
59)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민사소송법약간의문제의견(民事訴訟法若干問題의견(意見))> 제30조와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關于철로운수법원(鐵路運輸法院)對經濟糾紛案件관할(管轄)範圍的規定>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路運輸法院)은 기층법원과 중급법원의 두 종류가 있으며 기층법원은 철로관리분국소재지(鐵路管理分局所在地)에 설치하며 전국에 현재 58개가 설치되어있으며, 중급법원은 철로관리국소재지에 설치되며 현재 베이징(北京) 등에 12개가 설치되어있다.[60]

해사법원(海事法院)은 해사손해배상사례, 해상계약분쟁(海上契約紛爭)사례, 기타 해사·해상사례와 해사집행사례 및 해사보전사례의 5부류의 총 42가지의 사례를 제1심으로 취급한다.[61]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의견 제2조에 따라 해사·해상사례는 해사법원(海事法院)의 관할로 되어있으며 해사법원(海事法院)은 審級上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사해상사례의 제2심은 당해 지역의 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이 담당한다.[62] 현재 해사법원(海事法院)은 다롄(大連), 톈진(天津), 칭다오(青島), 상하이(上海), 닝보(寧波), 샤먼(廈門), 광주(廣州), 해구(海口)와 우한(武漢)에 9개의 법원이 설치되어있다.

2005년부터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법률 법규에서 이미 '공적 인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상업사기 척결 전문항목 행동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국판발〔2005〕21호),[63] '전국 제품 품질과 식품 안전 전문항목 정비행동 방안'(국판발〔2007〕57호), '전국 제품 품질과 식품 안전 전문항목 정비행동 검사검수 업무 전개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국판발〔2007〕67호) '에이즈 예방퇴치 업무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국판발〔2010〕48호) 이와 동시에 대중들도 공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공인은 반드시 잘 알려져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과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저명한 과학자와 학자, 유명한 기업가, 유명한 문체 스타 등이다.

---

60) 單國軍 編著, 民事訴訟實務. 19-20면 참조.

61)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공포 <關于海事法院收案範圍的規定> 참조. 한편 중국은 최근 해사소송에 관한 특별절차법을 제정화였음이 주목된다. 즉 1999년 12월 25일에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中華人民共和國海事訴訟特別程序法이 그것이다. 이 법은 12장 127조에 이르는 방대한 것으로 해사소송 전반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민사소송법과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동법 제2조).

62) 前揭, 單國軍、 民事訴訟實務, 20면.

63) 國辦發 [2005] 号通知規定:'在保健食品、藥品、化妝品和医療服務广告中, 禁止使用任何人包括社會公衆人物的形象, 以消費者、患者、專家的名義作証明.'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공적 인물의 분류에 관하여 현재 중국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구분 유형이 있다.

첫째, 중국 실정에 근거하여 공적 인물을 정치형 공적 인물과 사회형 공적 인물로 구분한다.

둘째, 사회적 자원의 유형에 따라 공인을 권력 자원형 공인, 지적 자원형 공인, 주의 자원형 공인, 부 자원형 공인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 분류 기준에는 여전히 선천적인 결함이 뚜렷하게 남아 있기 뿐만 아니라 분류 방식도 서로 교차가 많고 범위가 아주 넓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자연인이 공인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인을 구분하는데, 공인을 생전의 공인과 사후 공인으로 구분한다.

넷째, 역사 발전 과정에 근거하여 공적 인물을 역사적 공적 인물과 당대 공적 인물로 구분한다.

다섯째, 대중의 영향력에 근거하여 공적 인물을 공적 인물과 유명 인물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정부 관료나 공공 관료이며, 공직은 없지만 공공 업무에서 활동해 온 정당 인물도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정부 관리나 공적 관리가 공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경우 지명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가리킨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 Ⅲ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법원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공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리를 취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의식을 갖고 앞서 살펴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중국 법원의 명예훼손 판결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1에서는 중국 법원 명예훼손 판결은 어떤 특성이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명예훼손 소송이 현재 체계적으로 정립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되는데, 판결에서 어떤 일관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중국 법원은 공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여 공인의 수인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를 통해서는 중국 법원은 공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여 수인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인은 그 사회적 영향력과 신분 자체로 공적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인(私人)과는 구별된다. 법원이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여 공인에 대해 비판의 수인 범위를 달리하여 판결하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 중국 법원에 나타난 공인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만약 중국 법원이 공인을 사인과 구별하여 판결하고 있다면, 판결문에 나타난 공인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고위공직자, 스포츠 스타 등 신분에 따라 공인의 유형을 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 2 절 연구방법

1. 사례의 출처 및 선택

주로 재판문서망(裁判文書网) 플랫폼(사이트)에서 '공인 명예권'에 관한 판결문을 수집한다. 최고인민법원은 2010년 '인민법원의 인터넷 재판문서 공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후 인터넷을 통해 재판문서를 수집할 수 있다. 재판문서의 공개는 중국 사법공개의 중요한 단계로서 사법투명성을 강화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유리하다. 인터넷을 통하여 법원 특히 대법원의 효력이 발생한 재판문서를 적시에 전면적으로 공포하는 것은 국제사법 분야에서 이미 큰 추세이며, 그 우세는 발포가 빠르고 면면이 넓어 열람이 편리하며, 사회의 관심사에 효율적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사법재판의 법률효과와 사회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는데 유리하다.[64]

1) 사례의 출처

분 연구는 선택된 사례는 주로 '재판문서망' 재판 문서 검색 플랫폼에서 비롯된다. '재판문서망'은 2013년 최고인민법원이 개설한 것으로 법률이 규정된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 최고인민법원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문, 재정서, 결정문은 일반적으로 모두 인터넷에 게시되어야 한다.[65] 그러나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트 불안정, 느린 링크 속도, 제한된 검색 등의 문제가 있어 사례 검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교차 검증과 누락된 부분 보완이 까지 점을 생각해서 사례 검색 플랫폼인 '북대법보', '무송안례', '취법안례' 등 참고해고자 한다.

64) 中國最高法院一批裁判文書首次网上集中公布. 2013.07.03.
65) 央广网. 2017.02.04. http://news.cnr.cn/native/gd/20170204/t20170204_523552804.shtml.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사례 선택 단계

본 연구는 '재판문서망'에서 수집한 '공인 인물' 사례 선택하며 예로 들어, 사례 선별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한다.

단계: 사례 표본의 예선. 웹브라우저를 열고 '중국재판문서망' 사이트로 들어가 검색창에 '공인'을 입력하고 왼쪽의 카테고리에서'명예권'을 클릭한 다음 왼쪽의 '문서유형'에서'판결문'을 클릭한다. 2022년 10월 4일 첫 검색 당시 '중국재판문서망'에서는 공인의 명예권 판례에 대한 판결문이 310건 검색됐다. 그 중 '법원급' 란에는 최고인민법원이 나타나지 않았고 중급 법원과 기층법원만 나온다. 2023년 10월 최종 검색에서 '재판문서망'에는 공인의 명예권 관련 판결문 319건이 검색됐다. 법원 계급에서는 중급법원 판결문 45건, 기층법원 판결문 274건이 나왔다. 319건 사례들이 모두를 조사하여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유효한 사례는 총 313건으로 집계된 결과가 나왔다. '재판문서망'에서 최고인민법원의 명예권에 관한 판결문을 검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대법보' '무송안례' '취법안례'등 재판문서 검색 플랫폼을 통해 공인의 명예권에 관한 판결문 충 49건 검색하였다. 그 49건중에서 최고인민법원 심리한 명예권에 관한 판결문은 11건이다.

<표 2> 사례 출처

사례 출처	건수	백분율(%)
재판문서망	313	86.5%
기타(북대법보 무송안례 취법안례)	49	13.5%
합계	362	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 Ⅳ 장 명예훼손 및 공인 관련 판례 분석

제 1 절 명예훼손

1. 공인 명예권 사례 통계

<표 3> 사례 심리 소재지

사례 제1심 소재지	건수	백분율(%)
베이징시(北京市)	211	67.41%
텐진시(天津市)	6	1.92%
랴오닝성(遼宁省)	3	0.96%
지린성(吉林省)	1	0.32%
상하이시(上海市)	5	1.60%
장쑤성(江蘇省)	11	3.51%
저장성(浙江省)	2	0.64%
푸젠성(福建省)	1	0.32%
장시성(江西省)	1	0.32%
산동성(山東省)	2	0.64%
허난성(河南省)	5	1.60%
후베이성(湖北省)	3	0.96%
후난성(湖南省)	2	0.64%
광둥성(广東省)	37	11.82%
충칭시(重慶市)	8	2.56%
쓰촨성(四川省)	9	2.88%
구이저우성(貴州省)	1	0.32%
윈난성(云南省)	1	0.32%
산시성(陕西省)	3	0.96%
닝샤 회족 자치구(宁夏回族自治區)	1	0.32%
합계	313	100%

<표 3>는 '재판문서망'을 통해 사례발생 소송지역 분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베이징시(北京市) 211건, 광둥성(广東省) 37건, 장쑤성(江蘇省) 11건, 쓰촨성(四川省) 9건, 충칭시(重慶市) 8건, 텐진시(天津市) 6건, 상하이시(上海市) 5건, 허난성(河南省) 5건, 후베이성(湖北省) 3건, 랴오닝성(遼宁省) 3건, 산시성(陕西省) 3건, 저장성(浙江省) 2건, 후난성(湖南省) 2건, 산동성(山東省) 2건, 푸젠성(福建省) 1건, 장시성(江西省) 1건, 지린성(吉林省) 1건, 구이저우성(貴州省) 1건, 윈난성(云南省) 1건, 닝샤 회족 자치구(宁夏回族自治區) 1건, 그 외 허베이성(河北省), 산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성(山西省), 안후이성(安徽省) 등 성(省)·시(市)는 0건이다. 데이터에 의하면 공인 명예훼손 사례는 주로 중국의 상위권 도시에 많이 발생되어 있을 알 수 있다. 그 중 수도인 베이징시(北京市)이 67.41%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광둥성(广東省)이 11.82%로 2위를 차지했으며 장쑤성(江蘇省) 등 도시들이 그 뒤를 이었다. 베이징(北京), 광둥(广東), 장쑤(江蘇) 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2.7%에 달한다. 반면, 중국의 하위권 도시들이 공인 명예훼손 관련된 사례가 매우 적게 나타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표 4> '재판문서망' 연도별 공인 승소/패소 결과

연도	재판문서망		
	승소	패소	합계
	사례 (%)	사례 (%)	사례 (%)
2013	7 (100%)	0	7 (100%)
2014	18 (81.8%)	4 (18.2%)	22 (100%)
2015	25 (100%)	0	25 (100%)
2016	38 (92.7%)	3 (7.3%)	41 (100%)
2017	69 (85.2%)	12 (14.8%)	81 (100%)
2018	44 (84.6%)	8 (15.4%)	52 (100%)
2019	26 (70.3%)	11 (29.7%)	37 (100%)
2020	18 (72%)	7 (28%)	25 (100%)
2021	11 (84.6%)	2 (15.4%)	13 (100%)
2022	4 (50%)	4 (50%)	8 (100%)
2023	1 (50%)	1 (50%)	2 (100%)
합계	261 (83.4%)	52 (16.6%)	313 (100%)

<표4>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 판결의 승소율은 83.4%, 패소율은 16.6%로 나왔다. 중국 90년대 초에 '해답'이 처음 발표되고 5년 뒤에 '해석'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판결 문서에는 온라인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이 이러한 사례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인터넷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면서 판결 문서의 온라인 공개가 요구되었다. 그 후 중국 전역에서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했으며, 2015년 이후 공인 명예훼손에 관련 사례가 증가했으며, 특히 2017년에 정점을 찍었다. 중국의 법원은 재판 경험을 축적하여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 해석 체계를 형성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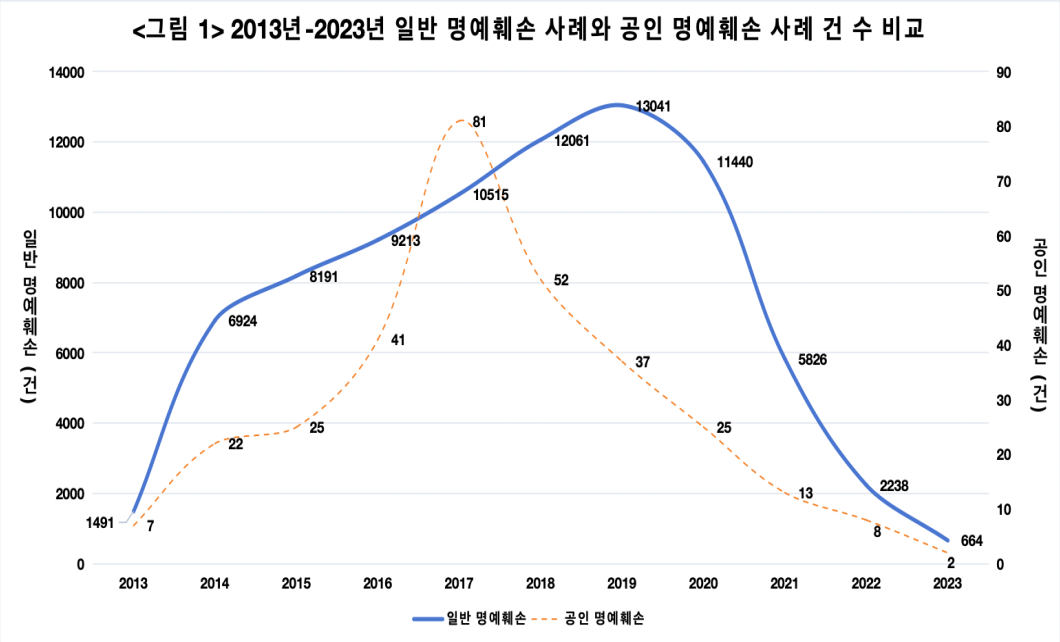

그림 1 '재판문서망'자료 출처 통계에 근거하여 정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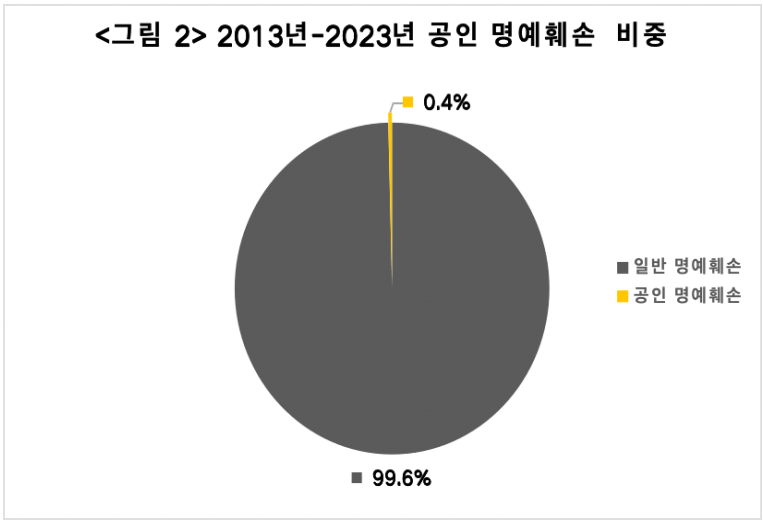

중국 법원에 접수된 각종 명예훼손 소송 건수를 보면 2013년-2023년의 건수 증감 변화는 크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2014년의 2년 동안은 29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부터는 일반 명예사례, 공인 명예사례 건수가 급증했다. 분석을 거쳐 주로 이 시기 문예, 영화, 스포츠 스타들이 각종 민영 성형, 재활 등 병원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여 초상권, 명예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침해했다고 고소하는 사례수가 동시에 증가했다. 이들 중 한 연예인가 여러 사람을 소송한 경우도 있는데, 피고들은 대부분 불복하여 중급법원에 재항소한 경우도 거의 원심대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율이 80% 이상이다. 이는 2016년부터 공인 명예소송이 급증한 주요 원인이다. 이 같은 건수가 급증한 것은 연예계 스타들의 '양떼 효과'(캐스케이드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 2019년은 전년도에 비해 건수가 줄어들었다. 주된 이유는 광고물 침해 소송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2014년 기간에 발생한 총 건수보다 훨씬 많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수량 통계에 있어서 '재판문서망'이 인민법원의 민사판결서에 따라 발급한 번호를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채택하였으며, 동일한 소송사례의 1심, 2심, 재심의 중복통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2> 비중 증감 변화 분석 2013-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일반 명예사례에서 공인 명예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0.4%이다.

2013-2023년 '재판문서망' 통계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총 313건의 공인 명예훼손 소송 구조, 점유율, 재판 결과 등 7가지 지표를 대략적으로 분류했다. <표 5>는 다음과 같다. 이것으로 공인 명예훼손 사례의 성질, 형식, 범위, 결과의 변화를 고찰하여 중국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공인 명예훼손 침해 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표 5> 2013년-2023년 공인 명예훼손 사례('재판문서망'중 313건 사례)

소송 구성	총건수 (원고)	총점유율(%)	1심 (원고)	2심 (원고)	승소(원고)		패소(원고)	
					1심	2심	1심	2심
공무원	6	1.9%	4	2	2	0	2	2
연예인	250	79.9%	245	5	240	3	5	2
스포츠선수	1	0.3%	1	0	1	0	0	0
기업/기업인	32	10.2%	1	31	1	1	1	29
인플루언서	5	1.6%	4	1	3	0	1	1
화가	1	0.3%	1	0	0	0	1	0
사인	18	5.8%	16	2	10	0	5	3
합계	313	100%	272	41	257	4	15	37
					261		52	
					313			

<표 5>는 '재판문서망' 데이터 자료 출처 통계에 근거하고 정리하였다.

313건의 사례를 7가지 지표로 분류한 통계를 통해 중국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구성, 비중, 재판결과 등 명확히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사례 구조

313건의 사례을 기준으로 원고의 신분을 분류한 결과 총 6가지 유형이 있다. 사례별 비중 1위는 연예인이 가장 많았고 313건 중 250건을 차지해 79.9%로 가장 높았다. 연예인이 각종 민영 성형, 미용, 재활 등 병원, 언론, 회사, 기업체, 법인, 잡지사 등을 상대로 명예권, 초상권 침해 소송을 병렬적으로 제기한 사례 및 순수하게 인터넷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등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명예권 침해 사례이다. 이 두 종류의 권리침해 행위는 모두 원고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원고의 초상를 사용하고 대량의 상업적 홍보 문장 및 허위 광고를 곁들이는 것으로서, 그 중 저급하고 건강하지 못한 내용이 많다. 심지어는 연예인의 명예훼손까지 눈도장을 찍는데, 피고는 원고를 그가 운영하는 각종 홍보 잡지에만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운영하는 각종 웹사이트에도 게재하는데, 이러한 권리침해 형식의 특징은 광고, 서면문자, 명예, 초상, 웹사이트가 결합된 것이다. 사례 비중 2위는 회사가 313건 중 32건으로 10.2%를 차지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심 재판을 통해 재심을 청구한 주요 원인이지만 패소율은 90.6%에 이르고 승소율은 9.4%로 10%를 밑돌았다. 모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 사인은 사인으로 18건으로 5.8%를 차지했다. 원고가 모두 사인인 상황에서 타인에게 원고의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하다. 4번째 원고 유형은 공무원으로 6건으로 1.9%를 차지했으며, 지방에서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포함됐다. 사례 비중 5위에 오른 원고는 인플루언서들이었다. 총 5건 중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이 성행하는 시대에서 틱톡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원고가 일반인에서 인지도가 있는 인플루언서로 탈바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0.3%에 이르고 공동 6위에 오른 스포츠 선수와 화가이다.

2) 신분 인정

‘공인여부’는 판결문(원고, 피고, 법원) 세자 중 한쪽이 이 개념을 제시한 것을 통계적 근거로 한다. 그러나 연예인, 스포츠 선수, 인플루언서 등 공인이라고 자인한 고소인이 8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분법적 원리에 따라 공인이 될 경우 일반 명예 사례보다 승소 문턱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중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피고들이 대부분 상업적 목적으로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의 승소율이 매우 높고 인지도가 높을수록 각종 배상금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3) 재판 결과

첫째는 연예인들이 각종 민영 성형, 미용재활 등 병원, 언론, 회사, 기업체, 법인, 잡지사 등을 상대로 명예권, 초상권 침해 소송을 병렬적으로 제기한 사례이다. 이러한 침권행위의 구성 요건에는 위법행위가 있고 객관적으로 손해 사실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다. 이 몇 가지 사안이 모두 명확하기 때문에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250건 중 1심에서 240건 승소, 5건 패소, 2심에서 3건 승소, 2건 패소, 패소 사유는 거의 명예 침해 미구성으로 패소했다.

둘째는 회사 기업의 경우 32건의 원고 중 1심에서 1건에 불과하고, 31건은 모두 1심에 불복해 2심에서 항소했지만 대부분 기각돼 1심 원심을 확정했다.

셋째는 사인으로 총 18건이며, 원고 승소 10건, 패소 8건이다.

넷째는 공무원으로 모두 6건인데,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한 경우는 2건,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경우는 각각 2건이다. 그 패소 원인은 사실과 다르며, 피고의 행위는 비록 부당하지만 원고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지지하지 않으며, 소송청구는 기각된다.

다섯 번째는 인플루언서 총 5건으로 승소 3건, 패소 1심과 2심 각각 1건이었다. 패소 원인은 원고의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스포츠 선수와 화가이다. 각각 1건이다. 스포츠 선수는 승소하고 화가는 패소한다.

4) 특성

2013년-2023년 10년간 중국 공인의 명예권 사례 심리 현황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대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사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5년간은 중국 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민들이 자신의 명예권에 대한 중시도가 날로 높아지고 권익보호 의식이 부단히 강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이 마음대로 명예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화를 참지 않고 법률의 무기를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국의 발전진보의 징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반영한다. 일부 기업 회사, 특히 일부 민영 병원은 법률의식이 희박하고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연예인의 명예와 초상을 마음대로 침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중국 법률이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하고, 위법비용이 낮으며, 경제적 배상이 너무 적은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후 2018년-2023년 동안 우리는 사례의 감소 추세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공민들은 점점 더 명예권과 초상권을 중시하기 시작하고, 권익보호 의식까지 직접적으로 입에 붙이고, '조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 민영기업 법률의식이 형성되었다.

2013년-2023년 일반 명예훼손 사례에서 공인의 명예훼손 사례 비중 분포도를 보면 일반 명예훼손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 미만으로, 일반 명예권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비중이 작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영향력이 매우 크고 관심도가 높다. 2002년부터 시작된 '범지의(范志毅) 사례', '고효송(高曉松) 사례', '여추우(余秋雨) 사례', '장예모(張藝謀) 사례' 등등, 최근 방주자(方舟子)가 최영언(崔永言)을 고소하는 사례까지 사례 접수부터 재판 결과까지 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이러한 분쟁소송은 주로 영화와 텔레비전에 나온 연예인이나 체육계 유명인의 스캔들 일화이지만, 사회대중이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사회 공공사례와 연결될 때 인터넷 뉴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러한 명예권 침해의 방식이 다양하고, 루트가 많으며, 수단이 다변화하는 등 이러한 종류의 명예권 사례는 이미 일반적인 의미의 개인 사례가 아니며, 이러한 종류의 사례 재판 의의는 이미 그 재판 결과보다 훨씬 크다.

중국 사법에서 명예 사례를 이분법으로 관철한 이래, 연예계는 수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왔다. 이것은 현재 중국 공적 인물 명예훼손 사례의 큰 특색이다. 이런 종류의 연예인은 공인 범주에 속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업무의 성질과 유명해지는 과정은 언론 매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과 언론과의 관계는 마치 물이 배에 실릴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는 관계와 같다. 또한 가장 쉽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집단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명예권 사례는 언론 매체의 감시, 문예평론에 의한 명예권 사례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권 사이의 균형은 현재 언론법학의 기본적 공감대 중 하나로, 사인이 언론을 고소할 때 언론의 자유권이 명예권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공인이 언론을 고소할 때에는 명예권이 언론의 자유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陳志武, 2005).

각 국가의 입법 사법을 참조하여, 대다수 국가는 언론 자유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한 사회 문명의 표징일 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법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기도 하다. 중국은 명예권의 법적 보호에 있어서 2002년 이전까지 언론 매체가 대부분 패소했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진전이다.

제 2 절 공인 판례 분석

중국의 현재 사법관행과 판례를 참고할 때 '공공인물'로 '공무관원'을 표기한 한 사례만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차이지밍(蔡継明) 대 바이두(百度案) 사례'[66]이다. 차이지밍은 15년간의 정협위원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휴일개혁안을 제출했을 때 전국 정협위원이었으며, 후에 전국인대 대표로 선출되었으니, '정협위원'이든 '인대대표'이든 모두 공공기관 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시(北京市) 제1중급법원은 바이두가 사후관리 의무를 게을리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차이지밍을 침범한 손해 결과가 확대됐으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바이두가 차이지밍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 1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공기관 공무원'이 처음으로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명예권을 지켰다.

66) 新華网; 清華教授蔡継明狀告百度獲賠10万元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6>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례

	사례명	원고	피고	원고 승패	판결 내용
1	왕발영(王發英), 유진(劉眞) 및 '여자문학<女子文學>' 등 4개 잡지에 대한 명예권 침해 분쟁 소송	연구소 직원	작가	승소	헌법과 민법 통칙 제101조에 근거하여, 공민의 명예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모욕, 비방 등 방식으로 공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네 개의 잡지가 명예권을 침해하는 이 작품을 전재하는 것을 발표하여 파장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상의 행위는 원고의 명예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원고 및 그 가족에게 정신, 업무, 생활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2	진수금(陳秀琴)이 위석림(魏錫林)을 상대로 제기한 '오늘 저녁 신문<今晚報>'사 명예권 분쟁 사례	곡예사 어머니	작가 '오늘 저녁신문<今晚報>'사	승소	민법 통칙은 공민은 명예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는데, 공민이 죽은 후에도 그 명예권은 여전히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3	서양소(徐良訴), 조창위(趙昌偉) 명예권 침해 분쟁 사례	현역 군인	기자	승소	공민은 법에 따라 명예권을 향유하며, 공민의 인격과 존엄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피고 '상하이문예보<上海文藝報>'는 이 글의 발표가 원고의 인격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심사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 엄중하게 사실과 맞지 않는 글을 발표하여 원고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여러 방면의 비난을 받게 하여,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확대하는 작용을 하였으며, 그 행위는 업무상 실수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과실을 가지고 있다.
4	호기초(胡驥超), 주공소(周孔昭), 석술성(石述成)이 유수충(劉守忠)을 상대로 제기한 '준의만보<遵義晚報>'사의 명예권 침해 분쟁 사례	문화관 직원	'준의만보<遵義晚報>'사	승소	문학예술창작은 공민의 자유이며, 국가는 공민이 문학예술사업에서 공민에게 유익한 창조적 사업에 대하여 격려하고 도와준다. 공민은 문학예술창작의 자유권을 행사할 때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례명	원고	피고	원고 승패	판결 내용
5	니페이루(倪培璐), 왕잉(王穎)이 중국국제무역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권 침해 분쟁 사례	공민	백화점	승소	먼저, 공민이나 법인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둘째, 피고 직원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경멸적인 표현으로 원고가 물건을 훔쳤는지에 대해 묻고, 시장 내에 붙인 무효게시물에 근거하여 원고의 소포, 옷 등을 수색한다. 상술한 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이미 폄하되었다고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두 원고의 품성, 명망, 신용 등 방면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원고의 명예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피고의 직원은 직장에서 피고가 규정한 업무직책을 이행할 때 원고에 대해 침권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침권민사책임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민법통칙 제43조에 의한다).
6	이림(李林)이 '신생계<新生界>' 잡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허젠밍(何建明)의 명예권 침해 분쟁 사례	연구원(유명한 지질학자의 딸)	잡지사	승소	국민의 명예는 그가 죽은 후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공민의 명예가 그의 사후에 침해를 받으면, 해당 공민의 가족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허젠밍(何建明)은 보고문학에서 중국 현대 과학사의 중요한 사건을 묘사할 때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유명한 역사 인물의 경험과 인격을 평가할 때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7	장정(張靜)소 유링풍(兪凌風) 인터넷 환경에서의 명예권 침해 분쟁 사례	인플루언서	네티즌	승소	현대 전파 매체로서의 사이버 공간은, 즉 사람들이 정보를 전파하고 교류하는 장소이며, 더욱 건전하고 질서 있는 교류 공간은 마땅히 도덕의 규범과 법률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을 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례에서 피고는 주관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침해할 고의가 있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으며 홍안정이라는 아이디의 진실이 이미 타인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때의 교류는 이미 가상의 인터넷 공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도 더 이상 가상의 사람이 아니라 현실성, 목적성을 띠고 있어 불가피하게 타인의 장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어 권리침해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례명	원고	피고	원고 승패	판결 내용
8	시씨소, 호씨 인터넷 권리침해 책임 분쟁 사례	인플루언서	네티즌	승소	인터넷 사용자는 자신이 모욕,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등 사이버 폭력을 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우선 권리침해 발언에 대하여 캡처, 녹음, 공증 등 증거보전 조치를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블록체인 기술 등을 채택하여 전자증거를 보관하여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에 초보적인 권리침해 증거를 제공하고 해당 플랫폼이 즉시 삭제, 차단, 링크 끊기 등
9	베이징(北京) 진산안전 소프트웨어 유한회사와 저우훙이(周鴻祎) 명예권 침해 분쟁 사례	회사	기업공인	승소	웨이보는 하나의 공공 소셜 플랫폼으로서 정보를 광범위하게 퍼뜨릴 수 있으며, 국민의 언론 자유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공민의 언론 자유는 무제한적이어서는 안 되며, 타인과 사회 공익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본 사례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영주체의 상업적 신용,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	범지의(范志毅) 고소 문회신민연합신문업그룹 명예권 분쟁사례	스타플레이어	신문사	패소	첫째, 피고는 권리를 침해한 주관적 과실과 객관적 행위가 없으며, '피고는 주관적으로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소위 권리침해 손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피고의 보도는 원고의 명예에 손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셋째, 피고가 원고가 도박에 관여한 혐의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 매체가 공공업무에서 여론 감독 기능을 실시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11	방시민(方是民)과 최영원(崔永元) 명예권 분쟁 항소심 사례	인플루언서	cctv mc	승소	법원은 공공의제로 인한 인터넷 상호욕설 사례를 처리할 때 관련 웨이보 게시의 배경과 내용, 웨이보 언론의 특징, 사실진술과 의견표현의 구분, 당사자의 주관적인 권리침해의 악의성, 공적 인물의 인격권 보호의 적당한 감소와 발언시 높은 주의의무 기준, 언론이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정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웨이보 영역 행위자의 정당한 표현자유 행사와 타인의 명예권 침해사이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10년 2월 28일, 광시 라이빈시(广西來賓市) 담배국 국장 한봉(韓峰)의 일기가 인터넷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퍼졌다. 이 일기는 2007년 9월 24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매일의 일기와 그 후의 5편, 총 145편을 기록한 것이다. 이 일기에는 한봉(韓峰)이 업무상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뇌물을 받고 사생활에서는 여러 명의 연인와 바람을 피운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네티즌들은 일기에 기록된 사례, 인물의 인상털기을 검색한 결과 하나하나 증명할 수 있었다. 일기문 사례가 터진 후 광시 장족 자치구(广西壯族自治區) 담배국은 정식 조사를 벌여 '초기 조사 상황에 따라 일기 내용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사자는 정직 심사를 받았다[67].

충칭시(重慶市) 펑수이현(彭水縣) 교육위원회의 간부 친중페(秦中飛)이는 2006년 8월 하순에 펑수이현(彭水縣)의 침폄시폐(針砭時弊)[68]를 일침하는 해학시 '친원춘·펑수이'를 편찬하고 의기양양한 나머지 이 시를 핸드폰과 sns를 통해 자신의 친구에게 보냈다. 펑수이현(彭水縣) 경찰국은 이 시가 원현 당위원회 서기 마핑(馬平), 현 당위원회 서기 란칭화(藍慶華), 현 당위원회 부서기 겸 현장 저우웨(周偉)이를 은유한 것으로 보고 8월 31일에 명예훼손 혐의로 친중페(秦中飛)를 형사구류했다. 9월 11일 펑수이현(彭水縣) 검찰원은 친중페(秦中飛)이 체포를 승인했다. 9월 28일 친중페(秦中飛)이는 보석을 받았다. 펑수이현(彭水縣) 검찰원은 친중페(秦中飛)의 이 해학시는 마모(馬某), 란모(藍某), 저우모(周某)의 명예를 훼손하여 '형법' 제2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사례는 사회 관계자들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 여론은 펑수이현(彭水縣) 정부에 매우 불리했다. 10월 24일 오후, 펑수이현(彭水縣) 경찰국은 친중페(秦中飛)에게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 사례 취소 결정서를 내렸다. 다음 날, 친중페(秦中飛)이는 2,125.7위안의 국가 배상을 받았다[69].

2006년 3월 어느 날, 산서직산(山西稷山)의 세 계장급 간부 양진옥(楊秦玉), 남회영(南回榮), 설지경(薛志敬)은 직산현(稷山縣) 현위원회, 현정부 업무에 불만을 품고 몇 년 동안 현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리하여 '직산은 말솜씨가 둔하고 혀가 둔한 사람(稷山笨嘴笨舌人)'이라는 이름으로 '중구책문 이윤산(衆口責問李潤山)' (이윤산(李潤山)은 직산현(稷山縣) 당위원회 서기)이라는 제보 자료를 작성하여 직산현(稷山

67) <广西來賓烟草局局長日記門>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item/局長日記/9312332?fr=ge_ala
68) 시대의 병폐를 지적하여 고치게 하다.
69) 重慶彭水詩案 https://baike.baidu.com/item/彭水詩案/1940000?fr=ge_al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縣) 상급 운성시 당위원회 서기, 시장, 직산현 4대 팀 및 각 국의 일부 지도자에게 37부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 자료에는 홍루는 숙식, 여가, 오락이 하나로 되어 있으며, 이 서기는 '사무'에 정착하여 706호을 사용하고, 대통령 스위트룸의 하루 방값은 2680위안이며, 방값만 지금까지 백만위안에 달한다고 적혀 있다. 직산(稷山) '황제'는 대통령 스위트 대우를 누리고, '전임 여비서'는 은근히 모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치 교착같이 붙어 다녔으며, 심지어 이 서기의 외출 시찰조차도 '전임 여비서'는 은밀히 수행하고, 비밀리에 복무하며 직분을 다하였다. 직산현(稷山縣) 검찰원은 명예훼손죄로 세 사람을 기소하였고, 직산현(稷山縣) 법원도 명예훼손죄로 세 사람 모두 유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70]

사업가 자오쥔핑(趙俊萍)은 서풍현(西丰縣)에 두 개의 주유소와 한 개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 그 소유의 선펑(沈丰) 주유소는 철거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 해 5월에 자오쥔핑(趙俊萍)은 철거 보상에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선펑(沈丰) 주유소는 강제 철거되었다. 자오쥔핑(趙俊萍)은 불만을 성(省)에 보고했고, 성(省) 지도자는 서풍현(西丰縣)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2007년 2월 28일 서풍현(西丰縣) 서기 장즈궈(張志國)는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배상하지 않을 것을 표명했다. 또한 다른 주유소도 개업할 수 없다. 자오쥔핑(趙俊萍)을 서풍현(西丰縣)에서 내쫓을 것이다. 2007년 3월 3일에 방송국에서 자오쥔핑(趙俊萍)에 대한 수배령을 발포하였는데, 그의 쇼핑몰에서 세금을 훔친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양(沈陽)에 있는 자오쥔핑(趙俊萍)은 분개하여 서풍현(西丰縣)의 일부 지도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랴오닝성(遼宁省) 서풍현(西丰縣)에 큰 사례가 있다. 사례의 주인은 장씨 정현이다. 6년 동안 서풍을 독차지하였다. 탐장왕법(貪贓枉法).' 2007년 3월 21일 자오쥔핑(趙俊萍)은 서풍경찰에 붙잡혔다. 12월 28일, 서풍현(西丰縣) 법원은 자오쥔핑(趙俊萍)에게 명예훼손죄와 탈세죄를 선고하고, 3년 6개월의 유기징역을 병합 집행했다.[71]

이 사례는 '법인' 잡지의 기자 주문나(朱文娜)에 의해 알려졌고, '랴오닝 서풍: 한 편의 관상대결'이라는 글을 써서 잡지에 실었다. 그 글은 매스컴에 널리 퍼져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2008년 1월 4일 오후, 서풍현(西丰縣) 경찰국 경찰은 주문나(朱文娜)를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이미 입건하고 구인했다. 그 후 여론의 압력으로 입안

70) 郭延軍: <地方'一把手'不可公器私用違法止'謗'－－評山西稷山'誹謗'案的偵檢審>, 載 <法學> 2007 年 第 6 期.
71) 遼宁西丰誹謗案 朱文娜事件: https://baike.baidu.com/item/朱文娜事件/1022186?fr=ge_al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 구인이 철회되었고, 서풍현(西丰縣) 현위원회 정부가 방문하여 주문나(朱文娜)와 '법인' 잡지사에 사과했다[72].

이러한 사례에서, 공민들이 편지, 핸드폰, 인터넷, sns 등 형식을 통하여 공인의 횡령과 수뢰하고, 불량한 업무태도 등 행위에 대하여 폭로하고 댓글을 발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쳐 만약 사실로 조사되면, 적발된 공인은 당내에서 처분될 것이고, 경위가 엄중하면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다.

그러나 적발된 공인이 해당 시민에 대해 허위발언을 퍼뜨려 명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분쟁의 본질은 국민이 헌법이 부여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비판 건의 고발권과 공직자의 명예권이 충돌한다는 것이다(朱愛萍, 2011).

1. 긍정 이분법 판결: 孔慶東訴南京广電集團名譽權案 (공경동의 남경광전그룹 명예권 소송)

1) 기본 사례 개요

2013년에 난징(南京)방송TV 18채널 '听我韶韶'[73] 코너 진행자 우샤오핑(吳曉平)은 <楊子晚報>의 보도를 도입부로 하여 프로그램 평론에서 '베이징대(北大)에 쿵칭둥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는 전국적인 일부 명성은 완전히 욕에 의존해서 나온 것이다. 교수는 우리나라 문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이다. 만약 욕설을 한다면, 당신은 그가 도대체 교수인지 야수인지 말할 수 있는가?' 동시에 남경광 전력망에서 같은 시기에 이상의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라오우, 베이징대(北大) 교수 쿵칭둥은 교수인가 야수인가? 프로그램 제목으로 이 비디오는 현재 남경광의 전력망에 걸려 있으며 클릭을 거듭하고 있다. 원고 쿵칭둥은 난징방송의 사회자 우샤오핑이 모욕적인 언어로 공격하고 원고를 폄훼하였으며, 그 행위가 원고의 명예권을 엄중히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여 베이징시(北京市) 해전구 인민법원에 상소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침해를 즉시 중지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2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판결할 것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난징방송의 논평이 관련된 사례는 실재하며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

72) 朱文娜事件: https://baike.baidu.com/item/朱文娜事件/1022186?fr=ge_ala
73) (2015)一中民終字第02203号.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쿵칭둥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시(北京市) 제1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1중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한다.

2) 사례의 초점

이 사례의 심리의 쟁점은 피고 우샤오핑이 관련 사례에 대하여 한 논평이 원고 쿵칭둥에 대한 모욕이고 나아가 그의 명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원고는 첫째, 피고가 권리를 침해한 언어가 두 군데라고 생각하는데, 피고는 자신의 홈페이지(남경광전력망)에서 <베이징대 교수 쿵칭둥은 교수인가 짐승인가? 방송 제목으로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다. 해당 제목은 욕설의 모욕적인 언어로, 의문문식으로 강조하지만 욕설은 짐승이나 다름없으며, 그 자체로 명예권 침해가 된다. 피고는 원고가 유명해진 이유가 욕설의 결과라고 말하는데, 이 논평은 명예훼손이 된다. 둘째는 원고가 1심 법원이 공인임을 인정한 것은 명백한 경향성을 띠고 있으며, 설령 공인이라 할지라도 명예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인격적 모독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우샤오핑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사회 사례에 대해 평론을 발표하는 것은 직무, 업무 행위에 속하며 책임은 남경광전그룹이 부담한다고 변명했다. 사회자의 논평이 관련된 사례는 실제 존재하며, 논평 과정에서 사용한 언사도 객관적이고 공평한 것일 뿐, 원고가 베이징대학교 교수로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뿐, 공격적인 언어는 나오지 않았고, 쿵칭둥을 폄훼하지 않았으며, 쿵칭둥의 명예권을 침해할 목적과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심판 요지

베이징시(北京市)구법원, 1중원은 심리를 거쳐 첫째, 피고가 TV프로그램에서 <양자만보>의 보도를 도입부로 하여 TV뉴스 평론 프로그램에서 신문읽기를 기초로 한 평론과 관련된 사례는 실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뉴스 논평 프로그램은 뉴스 논평의 가치가 있는 사회적 이슈와 공공 사안에 대해 논평하고 분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논평과 해부 문제는 피비판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정신적 고통과 심지어 상처로 이어져 명예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언론 매체가 현시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감시에 비추어 볼 때, 평론과 같은 권리는 공공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며, 언론 매체의 감시와 평론과 같은 자유의 보호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실현하는 견해는 현재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뉴스 논평은 대중이 사상을 교류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여론을 감독하는 중요한 경로이며, 그 존재의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체의 악의적인 비평과 질의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용의 도량을 가져야 한다.[74]

둘째, 원고는 일정한 사회적 지명도를 가진 베이징대 교수이며, 사회 공적 인물에 귀속된다. 최근 욕설로 인하여 공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는 바, 근거 사실이 진실하고 주관적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할 악의가 없는 경우, 일부 범주에서 다소 격렬한 언사가 과격하더라도 정상적인 논평의 범주에 속하므로 공인은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야 하며, 인격적 이익의 법적 보호에 있어 적절히 가감하여야 하며, 원고의 소송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4) 사례 평가

이것은 이분법을 긍정하고 공인이론을 적용하여 심리하는 명예권 사례이다.

첫째 원고의 신분을 확정하다. 이 사례에서 1심, 2심 법원은 모두 직접 원고의 신분에 대하여 '...베이징대 교수, 욕설사례로 야기된 논란은 이미 공공사례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사회공적 인물에 속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75]

법원은 원고의 신분을 정의한 후, 이 사례 법관의 심리사유에서 비록 피고가 원고를 공인으로서 항변의 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원고의 범위를 정하였다. 그것은 판결의 설득력을 높여 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공정한 논평이라는 규칙이 적용되었다. 영미 명예훼손법에서는 피고의 논평이 사실에 기초하면 공정한 논평을 인용하여 항변할 수 있으며, 설령 일부 폄훼적인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인 범위에 속한다. 2004년판결('중국개혁안')에서 돌파적이고 두드러진 공헌은 두가지 가치있는 규칙을 확립한 것이다. 그중의 하나는 공정평론 항변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이 원칙을 인용하여 '피고의 논평에 근거한 사실은 진실이며, 피고는 내용과 수단에 모두 기회를 빌

74) (2015) 一中民終字第02203号.
75) (2015) 一中民終字第02203号.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 원고의 인격을 모독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명예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적 인물은 사회와 논리를 견디는 방면에서 용인할 의무를 져야 한다.

셋째 '실제적 악의' 규칙이 적용되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뉴스 논평에 있어서 평가의 마지노선은 원고가 피고가 고의로 헐뜯고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악의를 가졌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악의적으로 사실을 허구하여서는 안 된다.' 단순히 용어가 귀에 거슬리고 야박하다고 해서 공인의 명예권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침해당했다고 느끼지만 용인되어야 한다. 법원이 이 규칙을 적용한 것은 제8조의 규정을 제한하여 해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 일부 이분법적 판결: 應根甫等訴杭州文暉街道居委會名譽權案(응근보 등이 항저우 문휘가도 주민위원회 명예권 소송을 제기한 사례)

1) 기본 사례 개요

2009 년 12 월, 원고 응근보(應根甫), 임지혜(林智慧), 송씨(宋某)[76] 등 십여 명(京都苑業主)이 권익옹호팀의 명의로 연합서명한 서면자료를 관련 각 부문 지도자에게 보냈다. 그 후 피고(杭州市下城區文暉街道社區委員會)는 서면 형식으로 항저우시 하성구 원후이가도당공위, 사무소에 <진두화정 소유주 송씨가 일부 커뮤니티 주민들을 선동하여 왕궈핑(王國平) 서기, 자오민(趙敏) 서기 등에게 커뮤니티를 고발한 사례에 대한 상황보고>를 제출했다. (이하 '상황보고서'). 원고는 피고가 (상황보고에서) 대량의 사실과 다른 진술, 허위의 정황을 날조하여 원고의 명예와 인격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였다고 생각한다. 다음 해 후에 '상황 보고서'가 동네에 배포되었다. 그와 동시에 피고 회사의 지역사회 주임인 쉬씨는 <항저우일보(杭州日報)>에 이 사례와 관련된 글을 발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이미 원고의 명예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원고의 생활과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 첫째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사죄하며 영향을 제거하도록 판결; 둘째 피고는 각 원고에게 위자료 10,000원을 배상하고 소송비 전부를 부담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고의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76) (2015) 杭下民初字第01036、第01035号.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사례의 초점

이 사례 주요 심리의 쟁점은 첫째, '상황보고서' 내용 진술의 사실 여부다. 둘째는 도로에 '상황보고서' 무단으로 외부로 전파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이다. 셋째는 지역사회 주임 서씨가 <항저우일보(杭州日報)>에 발표한 이 일과 관련된 글의 내용이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피고가 소재 가도당공위에 제출한 '상황보고서' 중에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대량의 사실과 다른 진술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생각한다. 더 나쁜 것은 사실을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자료가 진두화정단지 건물주들 사이에 도처에 뿌려져 일부 건물주들이 진상을 알 수 없고 원고의 인품에 의심을 품게 되어 건물주위원의 파면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피고 단위 지역사회주임 서씨는 <항저우일보(杭州日報)>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발표하여 원고의 생활과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극악무도한 영향을 끼쳤으며, 피고의 행위는 이미 원고의 명예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피고는 변명하기를: 첫째 '상황보고'는 피고가 하급자로서 상급자에게 한 내부상황보고로서 지도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이며,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은 수리하지 않아야 하며, 원고는 피고가 이 문서를 확산시켰다는 증거도 없다. 둘째 '상황보고'는 사실이며, 의도적으로 원고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다. 셋째 '상황보고'와 산업위원회가 파면되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피고에 의해 야기된 것임을 증명할 수 없으며, 원고는 입증에 불리한 결과를 부담하여야 한다. 넷째 서씨(徐某)는 <항저우일보(杭州日報)> 기자의 인터뷰를 받았을 뿐, 기고된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다. 다섯 번째 원고는 산업위원회의 관련자 및 산업위원회의 주임으로서 특정범위내의 공인으로서 그 명예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종합적으로, 피고에게는 명예권을 침해하는 법적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심판 요지

법원은 심리후 사례사실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이 사례 소쟁의 당해 상황보고서가 원고에 대한 명예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해 상황보고서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피고는 단지 주관 단위로서 소재 가도의 당공위 관련 부서에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비록 개별적인 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현이 과격하고 부당한 점이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비방과 모욕의 고의가 없고 객관적으로는 원고의 명예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이 상황보고서의 유실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배포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행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명예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지역사회주임 서씨는 <항저우일보(杭州日報)> 기자에게 취재를 당하였고, 기자가 제공한 보도자료는 기본적으로 사실이며, 원고의 소송청구는 사실근거가 부족하여 지지하지 않으며, 원고의 소송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4) 사례 평가

이것은 중국 정부 행정의 색채를 띤 명예 분쟁이다. 이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가 특정 범위 내의 공인이라는 것을 항변 사유로 삼았으나 법원은 누가 명예훼손 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이분법적 원리를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례를 부분 이분 법안의 예시로 귀납하였다.

이 사례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 하나는 원고의 신분적 지위의 인정이다. 법원 판결문의 전문을 보면, 피고는 원고를 공적 인물로 하여 항소를 제기하는데, 현재 관련 입법의 지연으로 인하여 중국은 공적 인물의 개념과 범위, 사법해석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이 지녀야 할 사회적 폭넓은 인식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이 두 가지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사법적 관행에서 합의된 것이다. 이 사례의 원고는 일반 소유주가 선출한 소유주 위원이고, 피고는 주민 위원회이다. 지위와 영향력, 양자 중 누가 공인의 반열에 들어야 하는지, 주민 위원회라는 법인이 더 적합할 것 같다. 피고는 원고에 비해 충분히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 대응할 수 있다. 법원은 비록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공인으로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피고라는 특수한 신분과 강한 지위는 설사 피고가 이를 항변사유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일 수 있다.

이 사례의 또 다른 쟁점은 입증 책임의 분배이다. '내부 보고서' 문건의 확산과 유실, 보고서 내용의 진실성은 여기서 차치하고, 다만, 상관 내부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로서, 마땅히 관련 행정 관리 부서에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 보고서의 내용은 법원 심리 시 '보고서의 위법성은 없으나, 개별적인 표현에 과격하고 부적절한 점이 있다.'라 판단하였다. 법원에서 심리할 때 모두 표현이 과격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어떻게 유실 배포하게 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법원은 심리에서 '내부 보고서' 유출이 피고가 의도적으로 배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가 했다고 주장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분명히 이 사례를 심리하는 판사의 판단의 논리는 '누가 주장하고 누가 입증하느냐'이다. 그러나 절차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입증 규칙은 여기서 입증 책임 분배의 불균형으로 볼 수 있을까? 원고(건물 소유주 위원회 위원)에게 이렇게 법인격이 없는 '군소'민간 단체의 성원이 구청 산하의 한 행정 기구의 문서가 유실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지, 원고는 전혀 입증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 설령 '고의적인 유실'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음을 요구한다. 법원은 입증 책임 구성에서 피고 측을 향했다.

둘째로, 이 사례의 법원은 심리에서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권리 침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인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에 따르면 행위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손해사실이 발생한 경우 침해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과실(고의와 과실)이 있다. 피고의 문건 확산은 이미 규정된 범위를 넘어섰고, 그 내용은 이미 원고 등 업무와 생활 환경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객관적으로 아파트 단지 대부분의 소유주가 원고에 대해 오해하는 동시에 개선업위원회를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객관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와 명예의 폄훼를 초래하였다. 여기서도 피고의 과실행위로 볼 수 있는가? 만약 원고가 피고의 행위가 사실상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떨어뜨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피고의 행위가 제3자에 의해 인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王利明·楊立新, 2010).

3. 이분법적 판결 부정: 朱江洪訴仲大軍侵犯人格名譽權案(주강홍, 중대군을 상대로 한 인격명예권 침해 소송 사례)

1) 기본 사례 개요

피고 중다쥔(仲大軍)(모 경제연구센터 기자)[77]은 <粤港信息時報웨강정보시보>에 <格力再現褚時健式人物?>(저시건식 인물 저리 재현인가?) (이하 '중문'이라 함). 글은 원고 주강홍(朱江洪)(珠海格力電器股份有限公司董事長주하이꺼리전기주식유한회

77) (2004) 珠中法民一終字第744号.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 이사장)이 소속된 기업의 내부 주식분배와 기업 관리행위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이 글은 많은 관련 신문과 잡지, 웹사이트에 전재되고 평론을 발표하였다. 원고는 이 글에서 저시건(褚時健)[78]이라는 식의 인물에 비유하였다고 생각한다.

타인을 오도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원고의 명예권을 침해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첫째 피고는 즉시 침해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전국적인 영향력 있는 신문에 동일한 지면을 공개하여 사과할 것을 청구한다. 둘째 피고는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인민폐 50만 위안을 지불한다. 주하이시 향주구 인민법원은 1차 심사에서 <중문>의 내용이 사실무근이며, 평론이 엄중히 사실과 맞지 않아 명예침해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2심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2) 사례의 초점

이 사례 심리의 쟁점은 첫째, 문장 주제의 비유가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평석한 내용이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원고가 공적 인물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피고가 <중문>에서 格力集團(꺼리집단)과 格力電器(꺼리전기) 두 회사 사이의 관계를 평론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유자산을 착복하는 '저시건식한 인물'로 비유하여 원고의 명예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생각한다. 글은 원고가 글리그룹이 글리전기에서 소유하고 있는 58개의 주식의 분리부분을 그 개인의 소유로 귀속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날조하고 있다: 원고가 현지 정부 고위층의 힘과 사회관계를 동원하여 힘의 투쟁을 진행하는 등 사실이 아닌 허구를 하고 있다. 피고의 글은 원고의 인격적 명예에 대해 일련의 비방을 한다. <중문> 전국적으로 특히 광둥성 주장 삼각주 지역에 한때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 원고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거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으며, 원고의 좋은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는 '중문'은 사실의 기초와 합리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출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기자로서, 경제 평론가로서, 다른 공공 간행물에서 얻은 사실 정보를 검증할 강제적인 의무가 없다. '저시건식한 인물'의 제출은 피고가 원고의 명예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원고 개인의 글에 대한 느낌일 뿐, 권리 침해 사실을 구

78) 저시건: 저시건은 전국 10대 개혁 풍운아로 평가되었는데, 체제의 원인으로 인해 그가 기업에 대한 커다란 공헌은 보답을 받지 못했고, 심리 불균형이 심하여 횡령하고 뇌물을 받아 1999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성하지 않는다. 피고는 <중문>이 원고의 병세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사실적인 근거가 없다.

피고가 보도한 것은 사회 쟁점문제이며 공공사무와 공공이익문제와 관련되며 원고는 공적 인물에 속하므로 그 소송주장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악의적인 비방행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언론의 정당한 올림픽 감시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경미한 손해에 대해 당연히 이해하고 용인해야 한다.

3) 심판 요지

법원은 판명 후 첫째, <중문> 주제목은 질문식의 문법을 채택하고, 전문분석에 근거하여 표제의 효과는 원고를 겨냥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 내용은 또한 광범위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원고가 경제 심사와 형사 재판을 받는 저시건식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피고의 문장 중에 사용된 사례 내용은, 원고가 일부 지분을 자기 소유로 차지하려 하고, 작은 금고 장부 외 장부를 태우는 등의 사실 요건을 가리킨다. 이 사례들의 내용은 법률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중문> 발표 전에 원고를 '저시건식 인물'로 하는 보도와 평론이 없었고, 원고가 경제와 형사 방면에서 심사받은 객관적 사실과 관련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합리적 정보 출처'라는 항변 관점은 사실의 기초가 부족하고, 피고가 주관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일이며, 글의 의도대로 스스로 책임졌으며, 그 평론 효과와 사실을 허구하는 수단이 원고의 인격 존엄권과 명예권을 침해하여 원고의 인격을 폄훼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며, 원고의 심신 상처와 정신적 손해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추게 되었다.

둘째, '원고는 공적 인물이다'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원의 견해는 공적 인물의 정의와 구성요건이 본안 심리의 범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별대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손해는 용인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로 명예침해의 귀책법칙에 대항할 수 없다.[79]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하고 사실과 다른 논평의 영향을 제거하는 글을 게재하도록 판결했다. 원고에게 위자료 10만 위안과 수임료 1만 위안 이상을 배상하라.

---

79) (2004) 珠中法民一終字第744号.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사례 평가

이 사례는 이분법을 부정하고 공인이론을 적용하기를 거부한 사법적 좌절이다. 하나는, 원고의 공인으로서의 신분의 인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본 사례의 원고인 주강홍은 비록 상장회사 이사장이지만 주하이시 정부와 국자국(國資局)이 임명한 간부이며 국유자산 관리 부문이 층층이 권한을 위임받은 방식으로 출자자의 직책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그는 자본의 대표에 속하지 않으며 법률상으로는 국가 공무원에 속하며 전국 노동절 노동메달, 전국노동모범 등 명예로운 칭호를 받은 바 있어 널리 알려지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공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 인물이론에서 공적 인물이 가져야 할 특징에 따르면, 첫째 공공성, 즉 공적 직무에 임하거나 사회 공적 생활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는 것이다. 둘째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다. 셋째 사회공중의 관심 등에 관계된다. 원고의 조건은 거의 다 갖추어져 있다. 다시 중국 기타 성시의 기존 사법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당계례[80](唐季礼) 사례 판결문은 '… 정부 관원, 오락 스포츠 스타 내지 어느 지역, 어느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진 인물은 모두 공적 인물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례에 대하여 이 이론의 적용을 전면 부정하였고, 1심 판결은 원고를 공인으로 한 피고의 항변사유에 대하여 모두 기각하였다. 2심 법원은 '공인의 정확한 범위는 없다. 상고인이 피상고인을 공인에 비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적절하다[81]'고 더 직접적으로 정의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가 공인임을 부정했다.

둘째로, '실제적 악의적인' 규칙의 적용을 거부한다. 법원이 원고가 공인임을 부정한 이상, 이 사례는 일반 명예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을 뿐 '실질적 악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인이 피고의 명예침해를 고발하려면 반드시 더 무거운 입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위가 실제적 악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주관적으로 '실제적 악의'가 존재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과실개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이 사례는 <해답> 명예권 침해에 필요한 4가지 요건: 행위에 위법성, 손해사실, 인과관계, 주관적 과실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권리침해 여부를 인정하며, 귀책원칙에서 과실책임의 원칙을 실행한다. 주관적 과실이라는 쟁점에 있어서 법원은 피고가 주관적으로 원고를 공인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그

80) (2004) 滬一終民一(民)出字第13号.
81) (2004) 珠中法民一終字第744号.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기준에 따라 항변하여 명예침해에 대항하는 귀책법칙을 강조한다. 법원은 명백히 명예권 침해 책임의 구성 요건 중 주관적 요건을 확대하지 않고 축소했다.

셋째, '공정한 논평' 규칙의 적용을 거부한다. 이 사례는 2년전의 위추우(余秋雨) 사례, 중국개혁 사례와 많은 유사한 요소가 있지만 법원은 이 사례의 규칙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합리적인 정보 출처의 항변관점은 사실 기초가 결여되어 있으며 '기타 공공간행물에서 얻은 사실 정보도 진실이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사유에도 불구하고 입증, 대질, 인증 절차와 법률 적용에 있어서 판결 방향과 판결 결론은 상기 두 사례와 크게 다르다고 판시하였다.

주강홍(朱江洪) 대 중대군(仲大軍) 사례의 판결은 중국 학계와 사법계에서 시종일관 논쟁이 존재하고 있지만, 논쟁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사례는 전형적인 판례로 사례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반성과 사고는 이미 사례 자체를 넘어섰고, 중국 법치건설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원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 Ⅴ 장 결론

공인의 개념은 중국 사법문서에 기재한 이래 지금까지 35년의 사법실천을 걸어왔다. 본 연구는 중국 공인의 명예침해에 대한 사법판례의 실증적 고찰에 기초하여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귀납 분석법을 통하여 판결의 경향 및 공인에 대한 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명예훼손 구성 여부는 '피해자의 명예가 확실히 훼손된 사실이 있는지', '행위자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인과관계가 행위자의 주관적 과실에 바탕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2013-2023년 '재판문서망' 통계에 실린 총 313건의 명예훼손 소송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소송의 주체로는 연예인이 79.9%로 가장 높았다. 연예인이 명예와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상대는 각종 민영 성형, 미용, 재활 등 병원, 언론, 회사, 기업체, 법인, 잡지사 등으로 확인되었다. 원고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원고의 초상를 사용하고 대량의 상업적 홍보 문장 및 허위 광고를 곁들이는 등의 권리 침해도 있었다.

연예인 다음으로는 기업/기업인이 소송 주체인 경우가 많았다(10.2%). 기업의 경우 대부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례로, 그럼에도 2심 판결에서는 대부분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인과 공무원이 원고인 사례는 각각 18건(5.8%)과 6건(1.9%)으로 연예인 사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소송 선수를 보였다. 사인이 제기한 명예권 침해 소송에서는 승소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 사례에서는 지방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공무원도 포함되었는데, 패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패소 이유 중에서는 피고의 행위는 비록 부당하지만 명예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공무원 신분의 경우 명예권 침해에 대한 인정이 다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시대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면서 인플루언서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 사례도 점차 눈에 띄고 있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해서는, 법원은 공인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특정 지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 시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법원은 공인은 사회의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명도는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념에서 지역 범위는 공인의 사회적 지명도를 결정하고 시간 범위는 공인의 신분 획득이 돌발사례나 장기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를 통해 법원은 사회적 인지도, 직업과 활동, 미디어의 노출도,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 등의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에서의 인지도, 대중적인 영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직업과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경우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상업, 정치인, 연예스타, 스포츠 스타 등이 일반적으로 공인으로 간주된다. 공적인 플랫폼에서의 노출도 고려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자주 노출되는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이 공인으로 인정받기 쉽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인터넷 활동성과 팔로워 수 등을 고려해 공인인지 판단한다. 그리고 공인과 사인의 구분에 있어서, 법원이 구체적 사례와 사실의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요소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진 사람은 공인으로 인정받기 쉽지만, 상대적으로 널리 인식되지 않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인으로 간주한다. 이번 사례 분석에서, 공인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법원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도 이에 대한 지침이 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과 관련해서는, '공인의 권리 제약은 공인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결을 통해 확인된다. 중국 법원에서 나타나는 공인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여기에는 주로 정치인, 즉 국가 지도자, 정부 관료 등 정치 분야에서 뚜렷한 지위와 지명도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다. 연예인, 즉 영화, TV, 음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연예인으로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활약도와 인지도를 나타낸 사람들이 말한다. 스포츠 스타, 즉 운동선수, 코치 등 스포츠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거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가리킨다. 비즈니스 리더, 즉 기업가, 회사 임원 등 비즈니스 업계에서 중요한 지위와 넓은 인지도를 가진 사람들이 말합다. 저명한 전문적 종사자들, 즉 과학자, 학자, 의사 등이 이 분야에 현저한 공헌을 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가리킨다. 저널리스트, 사회자 저널리즘, 특히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과 같은 미디어 채널에서 노출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높은 사람들이 말한다. 소셜 미디어 블로거들, 즉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이 가리킨다. 쟁점 인물, 즉 쟁점 사례로 인해 대중의 관심사가 된 인물로서 사회운동가, 범죄자 등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인의 유형 구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언론 노출도, 사회적 인지도등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법원은 명예훼손 사례에서 관련자의 공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명예훼손 관련 판례의 특성 및 공인 법리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중국에서 명예권 보호의 한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그동안 이뤄진 명예훼손 및 공인 이론과 관련한 논의가 서구권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기존 논의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중국 판례 분석을 통하여 세계적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도 연구의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법원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 자료가 방대하고 연구자의 법률전문지식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주요 포털사이트('재판문서망')가 현재 해외 전역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판문서망에 수록된 자료의 시간적 범주도 10년(2013-202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 사례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미디어법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보도전파법에 대한 연구되고 있는 중이다[82]. 이러한 점도 이번 연구의 한계로 작용했다. 그리고 '재판문서망이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공적 인물의 명예침해 사례에 대한 판결문이 전혀 없어 '북대법망', '무송안례', '취법안례' 등 중국법률과 관련된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야 했고, 이는 지역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했던 이러한 한계의 문제는 앞으로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토론, 후속 연구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가 공인의 명예침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82) http://politics.people.com.cn/n/2014/1130/c1001-26119951.html (류빈걸: 중국은 전파 입법 신문법을 연구 중이거나 탄생할 것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문헌

권오승 (2014). 지정토론문,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도 정기세미나 종합자료집, 60.

김경호 (2023). 언론 상대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소송 연구: 대법원의 위법성조각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언론과법> 22(2), 31-67.

김민중 (2000).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공인·사인의 구분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18-32.

김봉수 (2013). 특집: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 공인(公人)에 대한 명예훼손법리의 함의(含意)와 그 한계: 미국의 '공인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5(3), 47-72.

박아란 (2017). 공인보도와 언론의 자유, 한국언론진흥재단, 32.

배금자 (2002).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언론중재> 22-36.

윤성옥 (2007).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0호, 150-191.

이승선 (2017). 한국 공인 연구 30년. <언론과법> 16(1), 1-51.

이재진 (1999).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3(4), 147-176.

이재진 (2009). 대중스타의 사생활 정보 공개의 한계와 법적 쟁점. <언론중재> 21-34.

이재진·이성훈. (2003).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41-176.

이재진·이창훈 (2010). 법원과 언론의 공인 개념 및 입증책임에 대한 인식적 차이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8권 3호, 235-286.

한상범 (1986). 보도와 공인·유명인. <언론중재> 14-23.

한위수 (2002).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의 比較法的 一考察. <언론과법> 1, 145-186.

황초 (2009). 판례형성에 관한 관찰과 법률분석: 우리나라 부실뉴스에 의한 공인의 명예권 침해 사건를 접점, 'J'. <화동정법대학 학보> 1.

孫漢琦 (2002). 中國民事訴訟의 관할(管轄)制度에 관한 硏究.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제6권, 310-33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万珂（2006). 新聞自由的法律保護[D].夏旦大學.

中國新聞法制研究中心編. <新聞法制全國學術研討會論文集> [G] 北京，中國民主法制出版社,1999.

于淼·楊燕川（2006). ‘論新聞報告中的公衆人物原則’.. <当代傳播>, 第5期, 55-57.

侯昊陽（2021). 公衆人物名譽權的限制性保護問題研究[D]. 華東理工大學.

劉海濤（2007). <中國新聞官司二十年> [M]. 北京: 中國广播電視出版社. pp120.

劉海濤（2007). <中國新聞官司二十年> [M]. 北京: 中國广播電視出版社. pp136.

劉青楊（2016). 公衆人物名譽權研究[D]. 黑龍江大學.

呂娜（2003). ‘論公衆人物名譽權的保護’.. <文學与藝術> 1期, 6-11.

吳飛（2003). 名譽權与表達自由之冲突-實際原則評析.. <中國傳媒報道> 第一期, 6-7.

單國軍 編著, 民事訴訟實務. 19-20.

姚澤金（2014). 公共批評与名譽保護[D].中國政法大學.

張慧謙（2022). 公衆人物名譽權平衡保護研究碩士學位論文,中央財經大學.

張新宝（1997). 名譽權的法律保護. <中國政法大學出版社> pp16-17.

張新宝（2004). 隱私權的法律保護（第二版). <群衆出版社>. 第97頁.

張民安（2012). 无形人格侵權責任研究. <北京大學出版社>. 第86頁.

徐迅（2002). <中國新聞侵權糾紛的第四次浪潮> [M]. 北京, 中國海關出版社. 20.

慕明春（2003). 輿論監督中的公衆人物隱私權保護. <新聞知識> 11月, 第32-33頁。

施大林（2017). 公衆人物名譽權的法律保護[D]. 上海社會科學院, 18-20.

曹宋琪 （2019). 新媒体环境下公衆人物名譽權的限制与保護. 華中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

曹越（2003). 從范志毅敗訴看輿論監督中 ‘公衆人物’的名譽權問題. <新聞戰線> 06 期, 第37-38頁.

李新天·鄭鳴（2005). 論中國公衆人物隱私權的构建. <中國法學> 05期, 第93-101頁.

楊士林（2003). 公衆人物的名譽權与言論自由的冲突及解決机制. <法學論壇> 06期, 第5~11頁.

架御方（2001). 我國輿論監督的理論与建构. <陳力丹自選集> 夏旦大學出版社.

柏雪 （2020). 涉公衆人物网絡名譽侵權案件的認定-以‘公衆人物理論’的司法适用爲切入点.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王利明（2005). <公衆人物人格權的限制和保護> [J]. 中州學刊, 2.

_____（2005). 公衆人物人格權的限制. <中州學刊>, 第2期, 23-26.

_____（2012). 人格權法研究（第二版), <中國人民大學出版社> 第218頁.

王利明·楊立新 《人格權与新聞侵權》 [M]. 北京. 中國方正出版社, 2010； 342.

石晨釗（2020). 新聞傳播誹謗侵權責任要件的法律适用 [D].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竇衍瑞（2005). 新聞權与公衆人物名譽權的冲突与救濟. <广西政法管理干部學院學報> 第5期.

蔣伶（2005). 名譽侵權与輿論監督[D]. 華東政法學院.

賀御方（1998). 傳媒与司法三題. <法學研究>, 6, 3-10.

趙猛（2013). 論公衆人物名譽權的法律保護[D]. 西南政法大學.

郭倩倩（2007). 論公衆人物隱私保護与限制的平衡. 對外經濟貿易大學 碩士學位論文.

郭延軍 (2007). 地方‘一把手’不可公器私用違法止‘謗’-評山西稷山‘誹謗’案的偵檢審, 載 <法學> 第 6 期.

陳泰志 (1999). 論新聞誹謗指控的定性依据及防控對. <新聞法制全國學術研討會論文集>, 北京: 中國民主法制出版社.

陳狄欣 (2020). 公衆人物規則對我國人格權糾紛司法實踐的影響-基于2014年－2019年167份民事判決書的分析. 中國社會科學院大學碩士學位論文.

馬忠法, 謝迪揚（2022). 論法官釋明的反思与完善 － 基于德·美·中國台湾庭審實录之比較－ . 동북아법연구, 15(3), 63-90.

魏永征（1994). 被告席上的記者. <上海人民出版社>

_____（2003). <西方傳媒的法制管理和自理>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68.

_____（2007). “考察‘公衆人物’概念在中國大衆媒介誹謗案件中的應用”.. <中國傳媒告>, 第7期, 20-43.

齊曉丹（2015). 權利的邊界－－公衆人物人格權的限制与保護，<法律出版社> 27頁.

_____（2015). 論公衆人物人格權的商品化. <法律适用> 04期，第58-62頁.

(2002) 二中民終字第 397 号判決書.

(2002) 靜民－ (民) 初字第1776号.

(2003) 東民初第1807号, 二中民終字第9452号.

(2003) 天法民一初字第1832号.

(2004) 滬一終民一(民)出字第13号.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04) 珠中法民一終字第744号.

(2006) 靜民一 (民) 初字第 2845 号判決書.

(2006) 二中民初字第 08419 号判決書.

(2015) 一中民終字第02203号.

(2015) 杭下民初字第01036、第01035号.

<關于審理名譽權案件若干問題的解答> 1993年頒布.

<關于審理名譽權案件若干問題的解答> 第7條.

<關于審理名譽權案件若干問題的解釋> 1998年頒布

<關于确定民事侵權精神損害賠償責任若干問題的解釋>

<最高人民法院公報> 1988年第2期.

<最高人民法院公報> 1989年第2期.

<最高人民法院公報> 1992年第2期.

<民法通則> 第101條.

上揭, 江偉 主箱, 民事訴訟法, 89, 梁書文-回明-楊榮新主編, 民事訴訟法及配套規定新釋新解. 202-203.

前揭, 單國軍. 民事訴訟實務. pp20.

前揭, 梁書文-回 明-楊榮新 主編, 民事訴訟法及配套規定新釋新解, 182.

前揭, 梁書文-回 明-楊榮新 主編, 民事訴訟法及配套規定新釋新解, 183.

前揭, 江偉 主線, 民事訴訟法, 89.

前揭, 江偉 主編, 民事訴訟法, 88.

Associated Press v. Walker,388 U. S. 130(1967).

Blacks law dictionary, west publishing Co. 1979 at 1171-1172.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 63 (1967).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Associated Press. v. Walker, 388 U.S. 130 (1967).

Garrison v. Lousiana, 379 U.S. 64 (1964).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Gertz v. Robert Welch. Inc.,418 U.S. 323(1974).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56-261 (1964).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70 (196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72 (1964).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76 U. S. 254(1964).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76 U.S. 254(1964).

New Zealand: Report of the committee on Defamation(1977)at pp.20-21.

Rosenblum v. Metromedia Inc., 403 U.S. 29 (1971).

Salmond & Heuston Law of torts(19th edition) Sweet & Maxwell 1987 pp.153

William Prossor, law of Zorts(4th ed 1971)p.739.

http://politics.people.com.cn/n/2014/1130/c1001-26119951.html

https://baike.baidu.com/item/朱文娜事件/1022186?fr=ge_ala

http://news.cnr.cn/native/gd/20170204/t20170204_523552804.shtml.央广网2017.02.04.

https://baike.baidu.com/item/彭水詩案/1940000?fr=ge_ala.

https://baike.baidu.com/item/局長日記/9312332?fr=ge_al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 Study on Libel and the Reasonings of Public Figure in China

JIE YANQIN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defamation-related judgments are made in Chinese courts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famation lawsuit precedents involving public figures. Additionally, the research seeks to explore how the courts determine and categorize the criteria and types of judgments regarding public figures through diverse case analyse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Chinese courts comprehensively assess the presence of clear damage to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wrongful act of the perpetrator and the resulting harm, and whether such causation is based on the subjective fault of the perpetrator when determining the unlawfulness.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dividuals, as judged by Chinese courts, are presented as individuals with “a certain degree of recognition within a specific region and time frame.” It was observed that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public figures vary based on their status and the type of public figure they are.

This paper holds significance in confirming the characteristics of defamation judgments, criteria for determining public figures, and the limitations of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rotecting reputational rights through an analysis of defamation-related precedents in Chinese courts.

Key words: Chinese defamation, public figures and private individuals, theory of public figures, actual malice, Chinese court precedent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